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제도 개선방안

2011. 6.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제도 개선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6.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기 표

##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김 도 승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김 지 훈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권 영 호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철 남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요 약 문

## 1. 기본 방향

### □ 종자산업법 체계 개선

-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가칭 『식물 신품종보호법』 제정안으로 이관)

### □ 종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종자산업육성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유통조사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
- 불필요한 규제 폐지, 과잉 규제 완화, 낙후된 조항 등 규제 선진화

현 행		개 선 방 향
총칙	정책추진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명시</li> <li>·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근거 마련</li> <li>· 통계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li> </ul>
종자산업 기반조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미흡 (제165조에서 포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근거 마련</li> <li>·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근거 마련</li> <li>· 국제 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 근거 마련</li> <li>· 지방자치단체 종자산업 사업수행 근거 마련</li> <li>· 재정 및 금융지원 근거 마련</li> <li>· 전문기관(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설립</li> <li>· 종자기술 연구단지조성 근거 마련</li> <li>· 중소종자업자 지원</li> <li>· 관련 단체 설립 근거 마련</li> </ul>

<p>품종목록등재 종자 보증</p>	<p>관련 지원 제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 생산대행 비용지원</li> <li>· 정부생산보급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예측불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li> <li>· 정부생산보급 종자 피해 발생시 지자체 협력</li> </ul>
<p>종자 유통 관리</p>	<p>규제 개선 필요 유통관리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완화(단순 수출입 신고의무 폐지)</li> <li>· 범위반 종자의 판매 또는 판매목적 진열·보관등 금지</li> <li>· 분쟁 종자의 시험·분석 대상을 모든 종자로 확대</li> <li>· 종자분쟁조정제도(ADR) 도입</li> <li>· 종자의 유통조사 제도 개선</li> <li>· 종자유통조사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li> </ul>
<p>보칙·별칙</p>	<p>별칙규정 적정성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 근거 신설 등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li> <li>· 별칙, 과태료 규정 정비</li> </ul>

## 2. 주요 개정 사항

### 가. 총 칙

#### □ 목적 조항 개선

- 종자산업 육성·지원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

#### □ 정의 규정 정비

- 종자의 범위 추가(‘묘목’ 추가)
- 종자업의 범위 추가(‘가공’, ‘재포장’ 추가)
- 그 외 산업육성과 관련이 미미한 사항 삭제, 개념 등 정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육성 책무 명시

- 현재 종자산업의 연구·개발 보급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전담하여 일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종자산업을 육성·보급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음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의무 명시

## □ 종합계획 수립·운용 근거 마련

-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근거 마련
  - 종합계획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를 두지 않음

## □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

## 나.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 □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 종자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규정

## □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국제협력 및 대외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그에 대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종자산업기술보급등사업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 농림어가, 종자업자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종자생산 농림어가, 종자업체 등에 대하여 종자의 개발·생산·보급·유통 등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법제도·정책 연구개발 기타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 근거 마련

##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에도모하기 위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민간육종연구단지(일명 Seed Valley) 지정 근거로 활용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소규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

## □ 중소종자업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현재 개인육종가의 경우 신제품 등록 또는 해외출원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나 관련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 ※ 지원내역(품종당) : 신제품 등록시 300만원, 해외출원시 500

## □ 종자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 사업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업체간 과열·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훼손을 방지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필요
-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다. 품종목록의 등재

### ◇ 분법에 따른 재편

- 현행 종자산업법 “제3절 심사(제33조), 제3장 품종의 명칭(제108조~제109조, 제111조~제113조)”은 신품종보호 절차와 밀접한 절차 조항이므로 본 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

## □ 품종명칭 등록(제3장) 규정은 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조정

- 품종명칭에 관한 등록요건, 출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신품종보호의 요건, 출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
- 따라서 품종명칭과 관련하여, ‘국가품종목록등재(현행 제115조)’나 ‘생산·판매신고(현행 제138조)’를 하려는 종자는 1개의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절차는 신품종보호법을 따르도록 함

## □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등의 생산대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하는 품종의 종자생산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국가생산 공급종자와 관련한 피해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 소위 종자사고가 종자의 결함(불량)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당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함
- 한편 생명체인 종자의 특성상 분명한 종자의 결함이 아니더라도 이상기후 등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일정한 지원 근거조항 필요
- 종자사고에 따른 피해원인 규명 및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라. 종자의 보증

### □ 과수묘목 보증관련 검사서류 보관기간 연장(3년⇒5년)

- 현재 종자분쟁 등에 대비하여 종자보증 관련 검사서류를 작물별 구분없이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과수묘목의 경우 식재한 후 5년이 지나야 묘목(종자)의 불량여부가 확인가능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 □ 보증종자판매와 생·판신고 조항 분리

- 현행 종자산업법은 법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에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종자 및 유통종자 판매 관련사항을 같은 조항에 규정
- ※ 현행 법 제138조는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장관이 고시한 품종 종자 포함) 판매시에는 종자 보증받은 후에 유통하여야 하며, 출원공개 및 품종목록 등재 외 종자판매시에는 ‘품종의 생·판신고’후에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성격이 상이한 ‘종자보증’과 ‘생·판신고’를 같은 조항에 묶은 것으로 각 조항을 관련 항목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분리

## 마. 종자의 유통 관리

### □ 종자업 등록 대상 확대(종자가공, 재포장업 포함)

- 종자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가공,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정보 필요성이 제기
-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종자를 가공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 종자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정을 종자업에 포함하여 법적용 및 관리 필요

### □ 생산판매 신고에 있어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의무화

- 신고한 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내용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

## □ 품종목록 등재작물의 단순 수출·입 신고 폐지

- 제도의 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20건이하/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종자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순 신고의무를 폐지
- 주요 식량작물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로 수입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있으며,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무분별한 수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또한, 타 법률에서도 국외 반출입하는 식물(종자 포함)을 관리하고 있어 민원인이 동일건에 대하여 다수의 기관에 중복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

## □ 유통종자의 진열·보관·판매금지의 적용 범위 확대

- 현행 종자산업법에는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는 판매대에 진열, 보관 및 판매금지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매자가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할 우려 있음
- 또한 일반 소비자가 불법·불량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판매자가 위법종자를 취급(진열·보관)하지 않는 적극적 대처방안 필요
- 종자판매자가 진열·보관·판매 금지해야할 사항에 대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 무등록 종자업자가 생산한 종자, 생·판미신고 종자, 품질 미표시 종자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

## □ 유통조사 규정 정비

- 법률단위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또는 위임하고, 행정조사의 법리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145조를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유통조사 실시하도록 함

## □ 종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현재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반 제품과 같이 분쟁조정을 하고 있으나 전문성 한계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유통중인 종자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행정형 ADR)
  - 사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내지 분쟁조정의 비효율 방지

## 마. 보칙, 벌칙 등

### □ 수수료 근거 신설

- 대비시험 신청 수수료,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등 2건 신설

### □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 수수료 관련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비
  - 수수료 반환은 청구에 따르며, 청구권 실효기간 설정(1년 또는 3년)

## □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 아래의 사항들은 그 의무위반의 정도나 태양, 의무위반이 종자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
  -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 또는 소위 5대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경우 받아야 하는 보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이외의 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및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판매되는 품종의 종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작물의 종자가 거쳐야 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경우
  -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관계공무원이 행하는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 목 차

요 약 문 .....	i
제 1 장 연구 개요 .....	23
1. 과제 개관 .....	23
2. 연구 목적 및 범위 .....	24
제 2 장 연구 추진 배경 .....	25
1. 정책 여건 .....	25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31
제 3 장 종자산업법 개정 방향 .....	33
1. 기본 방향 .....	33
가. 현행 종자산업법 체계 개선 .....	33
나. 종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33
2. 개편 요지 .....	34
제 4 장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37
1. 법안의 체계 .....	37
2. 총칙 규정 개정안 .....	39
가. 목적 조항 정비 .....	39
나. 종자 범위 확대 .....	47
다. 종자업 범위 확대 .....	49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육성 책무 명시 .....	51
마. 종합계획 수립·운영 근거 마련 .....	54
바.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	62
3.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규정 개정안 .....	65
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	65
나.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1
다.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74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그에 대한 지원 .....	78
마. 농림어가, 종자업자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80
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 ...	83
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98
아. 중소종자업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102
자. 종자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	105
4. 품종목록의 등재 규정 개정안 .....	109
가. 품종명칭 등록(제3장) 규정은 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 조정 .....	109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등의 생산대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112
다. 국가생산 공급종자와 관련한 피해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	115
5. 종자의 보증 규정 개정안 .....	119
가. 과수묘목 보증관련 검사서류 보관기간 연장 .....	119
나. 보증종자판매와 생·판신고 조항 분리 .....	121
6. 종자의 유통 관리 규정 개정안 .....	125
가. 생산판매 변경신고 의무화 .....	125

나. 품종목록 등재작물의 단순 수출·입 신고 폐지 .....	126
다. 유통종자의 진열·보관·판매금지의 적용 범위 확대 .....	131
라. 유통조사 규정 정비 .....	134
마. 시험·분석 지원대상 확대 .....	139
바. 종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141
7. 보칙·벌칙 규정 개정안 .....	154
가. 수수료 근거 신설 .....	154
나. 수수료 규정 정비 .....	156
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	157
8.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186
제 5 장 향후 과제 .....	213
1. 우수종자·우수종자업자 지정제도 도입 .....	213
2. 보증종자의 사후관리 강화 .....	222
3. 유통종자의 품질검정 제도 도입 .....	223
<b>【 부 록 】</b>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신규대비표 .....	225

## 제 1 장 연구 개요

### 1. 과제 개관

- 과 제 명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제도 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1년 3월 3일 ~ 6월 30일
- 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진 현황 및 역할

-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박사 / 연구 총괄·법안 구성)
-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려대 법학박사 / 유통질서 확립 분야)
-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 권리보호 및 산업육성 분야)
-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獨)마인즈대 법학박사 / 비교법 조사)

- 그 외 법안에 대한 다양한 외부전문가(학계, 연구기관, 국립종자원 등 종자관련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였음
-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 마련을 최종 목표로 관련 전문가의 정책 워크숍을 비롯하여, 종자관련 정부기관, 공공기관, 업계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수 개최하였음

## 2. 연구 목적 및 범위

- 종자산업법 및 종자산업 관련법령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여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현행 종자산업법(2011.7.1 기준)을 대상으로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문 신설 또는 현행 조문 개정을 통해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제시하였음

## 제 2 장 연구 추진 배경

### 1. 정책 여건

-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기초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종자산업의 중요성 증대
- 종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이 용이하여 선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

#### <주요 국가별 종자산업 동향>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기업 중심으로 자국내 시장을 탈피하여 세계 시장개척에 주력</li> <li>○ 신기술 개발 및 고품질 종자생산</li> <li>○ 농업인들의 고품질 종자에 대한 인식 증대로 고품질 종자 생산 촉진</li> <li>○ 기후적·지리적 다양성을 이용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세계 종자시장 공략</li> <li>○ GMO 종자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변화가 미국 기업이 세계 종자산업의 선두주자로 부각하는데 기여</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업체 규모별로 차별화된 전략 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회사: 다품목 위주의 생산체제로 글로벌 시장 공략</li> <li>- 소규모 회사: 품목별로 전문화·특성화하여 국내시장 공략</li> </ul> </li> <li>○ 농가고령화, 농가고령화,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고품질·저비용 종자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종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유전정보 활용한 품종 개발과 육종기간 단축</li> <li>○ 업체는 소비자 지향적인 품종개발 방식 도입, “기능성 강화” 품종 육성 주력</li> <li>○ 양적으로는 수입이 수출의 46.6배인 반면, 금액으로는 1.3배 수준</li> <li>- 대외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 종자를 높은 가격에 수출하는 전략 구사</li> </ul>
네델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보다는 시설원에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세계시장 주도</li> <li>○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li> <li>○ 품질의 고급화 정책으로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 추진</li> <li>○ 종자생산 후 유럽지역 내에서 신속한 유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내에서 1~2일안에 종자의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완료되는 시스템구축</li> </ul> </li> <li>○ 종자,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시설 등을 하나로 하는 패키지 수출로 시장확대</li> </ul>

- 세계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경쟁과 품종보호권 확대에 대응한 종자 산업 육성이 필요
  - 세계 시장 규모는 693억불 내외로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우리나라 종자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5,810억원(약 1.1%)에 불과한 수준임
  - ※ 대표적 기업인 몬산토의 경우 연 8천억원을 종자 R&D에 투자하고 있음(국내 총 종자 R&D는 연 500억원에 불과)

## &lt;우리나라 종자관련 사업 예산&gt;

(단위: 억원)

사 업	'09년 예산	'10년 예산	'11년 예산(안)	비 고
합 계	48	81	106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	35	10	농특회계
우수품종 증식보급	30	33	45	FTA기금
방사선 육종기반 구축	-	5	40	일반회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18	8	-	농특회계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	-	11	농특회계

○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2012년부터는 신품종 보호 대상작물이 전작물로 확대되어 무한경쟁 시작

※ 품종보호 대상작물: ('98)27건 → ('03)113 → ('08)223 → ('12) 전작물

- 식물신품종보호 출원이 5,370건('98~'11.5월 누계)이며, 최근 5년간 출원수는 2,518건으로 세계 8위 수준

※ 주요 UPOV회원국 품종보호출원현황 ('05~'09, 5년간 누계)

· EU : 14,229건, 미국 7,631, 일본 6,608, 중국 4,838, 한국 2,518

- UPOV 가입으로 품종보호권 설정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 발생

※ 과수, 화훼는 소규모 농원과 화원에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하며,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점차 증가

- 로열티 부담, 품종보호권 확대 등으로 자급체계확립을 위한 종자산업육성 시급한 시점

<작물군별 종자산업 실태('08, 농진청 추정)>

	주 관	발 전 정 도			현안 문제
		육종능력	채종(증식)	자급율(%)	
채소류	민 간	상	상	90	복제, 종자사고
과수류	기관, 민간	중	중	10	민간육종, 복제
화훼류	기관, 민간	중하	중상	5	로열티

- 종자는 농어업 생산성과 생산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신품종 개발에 장기간 투자소요로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불가피
- 세계 각국은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확보 및 R&D확대를 통한 신품종개발에 주력
- ※ 세계 종자시장(농작물) : 365억불, 우리나라는 약 4억달러 수준(약 1.1%)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현황>

- 농림식품부에서는 ‘11~‘15년까지 전북 김제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 종자업체 육종 연구기반 확충 추진 : 5년간 270억 투자
- 입주업체에 시설 장기임대 및 기자재 지원
- ‘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UPOV) 전면시행과 세계 종자시장 연 5.2% 빠른 성장으로 글로벌시대 종자강국 실현 Gold Seed 프로젝트 추진
- ‘12~’21년까지 총 8,140억원 투자하여 종자 수출시대 도약 추진
- 글로벌 시장개척종자·UPOV 대응 전략종자·미래형 종자 개발 등

- 국내 종자시장은 4억불(5.8천억원) 수준으로 세계시장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임
- 품목별로 식량 1.7천억원 채소 1.5, 화훼 1.1 과수 0.4억원

○ 우리나라의 경우 R&D투자 및 전문연구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종자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민간육종기반이 취약

- 국내 817개 종자업체 중 종업원 수 10명 이상업체는 23개(3% 수준)에 불과

※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민간 종자산업은 국내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구조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 체제하에서 국제적 거대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본격화되는 등 큰 변화를 겪은 바 있음.

※ 1997년 3월 일본의 Sakata사가 청원종묘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서울종묘가 스위스 Novatis사에 인수합병되었으며, 미국 Seminis사는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를 인수하였음. 그 이후 2001년 1월 신젠타(스위스)가 국내 노바티스사를 인수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하였고, 최근 (2007. 7) (주)씨텍스가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사에 인수되었음

#### <국내 10대 종자업체 현황(2009년)>

회 사 명	매출액(억원)	종업원(명)	연구원(명)
농우바이오	409	294	30
몬산토코리아(미국)	322	200	18
신젠타종묘(스위스)	150	81	6
다끼이(일본)	149	55	5
사카타코리아(일본)	116	85	7
동부하이텍	75	76	8
농협NH종묘	70	42	15
아시아종묘	67	59	10
대연육종연구소	26	10	4
현대종묘	25	24	9

- 국내 종자시장 점유순위는 농우바이오, 몬산토, 신젠타, 코레콘, 동부하이텍 순이며 대부분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경쟁력 취약함
  - ※ 일례로 청양고추의 경우 1983년 J종자업체가 개발한 품종이나 1998년 몬산토에 인수합병
-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우 쌀 등 식량 작물의 경우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등의 관(官) 주도로, 채소 작물의 경우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종자산업에 국제수준의 품질관리 기준 및 종자처리 기술이 도입되어 전반적인 종자품질의 향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도 끼쳤으나,
  - 고추, 배, 무 등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육종기술이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술로 변모하였고,
  - 주요 종자업체들의 과도한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 육종 전문가 등 종자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부진
- 식량·사료 등 경종작물은 정부가 품종개발 보급을 주도하고 있고 채소종자 개발 생산판매는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음
  - 벼·보리·콩 종자의 민간시장 점유율은 극히 미미 : 1%미만
- 정부는 종자생산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 수출경쟁력을 갖춘 전략종자 개발 추진
- 종자강국 실현과 식물신품종보호 전면 확대에 대비하여 종자산업의 육성지원과 식물신품종보호 강화를 위한 종자산업법 개편 필요

##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단 1개조(제165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어, 매우 미미한 수준
  - 총 176개조 대부분을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종자 보증, 분쟁 조정 등 절차법적 규정 등에 할애
    - ※ 다만, 최근 국회 의결(2011. 6. 23)되어 공포 예정인 개정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금융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법 조항 대부분 식물신품종 권리보호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자산업육성 규정은 미비하여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필요
- 품종보호 관련 절차법적 규정과 종자 보증·유통 등 실체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함
  - \* 절차법적 요소 : 품종보호 출원 및 심사, 품종보호권 설정, 심판·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 등
  - \* 실체법적 요소 : 종자보증·유통,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등
- 종자산업법을 실체법(산업육성·종자유통)과 절차법(신품종보호)으로 분리, 각 개별 법의 목적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 제기
  -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절차법적인 규정인 『종자육성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과 실체법적 규정인 『종자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10.10))
-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한 종자산업 발전의 법적 기반 조성 필요
  - 육종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연구단지 조성 등 실질적인 산업육성, 종자 품질관리 및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 3 장 종자산업법 개정 방향

### 1. 기본 방향

#### 가. 현행 종자산업법 체계 개선

◇ 현행 종자산업법을 분리하여 (분법)

- 종자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위주의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 식물신품종보호 규정을 분리,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

○ 품종보호 관련 절차법적 규정과 종자 보증·유통 등 실체법적 규정이 혼재된 현행 법률 체계 및 내용을 개선

- 현행 종자산업법에서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가칭『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 그 외 규정을 토대로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나. 종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 ◇ 종자산업육성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 종자의 품질관리 및 유통조사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
- ◇ 불필요한 규제 폐지, 과잉 규제 완화, 낙후된 조항 등 규제 선진화

○ 현행 종자산업법을 개정, 종자산업 육성·지원 및 품질관리중심으로 개편 및 신설(『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마련)

- 종자산업 종합계획수립(5년), 육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촉진 및 재정·금융 지원 등
- 종자산업진흥센터,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체지원 등 민간 종자업체의 육성 지원근거 마련
-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관련 종자 시험·분석 지원 확대 및 분쟁 조정위원회 도입 등
- 기타 불필요한 규제 폐지, 과잉 규제 완화 및 일부규정 보완·정비

## 2. 개편 요지

현 행		개 선 방 향
총 칙	정책추진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li> <li>·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li> <li>· 통계 및 실태조사</li> </ul>
종자산업 기반조성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미흡 (제165조에서 포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양성 지원</li> <li>·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li> <li>· 국제 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li> <li>· 지방자치단체 종자산업 사업수행</li> <li>· 재정 및 금융지원</li> <li>· 전문기관(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설립</li> <li>· 종자기술 연구단지조성</li> <li>· 중소종자업자 지원</li> <li>· 관련 단체 설립</li> </ul>

현 행

개 선 방 향

<p>품종목록 등재 종자 보증</p>	<p>관련 지원 제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 생산대행 비용지원</li> <li>· 정부생산보급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예측불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li> <li>· 정부생산보급 종자 피해 발생시 지자체 협력</li> </ul>
<p>종자 유통 관리</p>	<p>규제 개선 필요 유통관리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완화(단순 수출입 신고의 무 폐지)</li> <li>· 범위반 종자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보관등 금지</li> <li>· 분쟁 종자의 시험·분석 대상을 모든 종자로 확대</li> <li>· 종자분쟁조정제도(ADR) 도입</li> <li>· 종자의 유통조사 제도 개선</li> <li>· 종자유통조사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li> </ul>
<p>보칙· 벌칙</p>	<p>벌칙규정 적정성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 근거 신설 등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li> <li>· 벌칙, 과태료 규정 정비</li> </ul>

## 제 4 장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1. 법안의 체계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제 5 조)</p>	<p>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4 조 (종합계획), 제 5 조 (통계 및 실태조사)</p>
<p>제 2 장 종자산업의 기반조성</p>	<p>(제 6 조~제14조)</p>	<p>제 6 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 7 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 8 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 9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제10조 (재정 및 금융지원 등) 제11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설립) 제12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3조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제14조(단체의 설립)</p>
<p>제 3 장 품종목록의 등재</p>	<p>(제15조~제22조)</p>	<p>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17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제21조 (품종목록의 보존) 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p>
<p>제 4 장 종자의 보증</p>	<p>(제23조~제35조)</p>	<p>제23조 (종자의 보증), 제24조 (국가보증의 대상) 제25조 (자체보증의 대상), 제24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25조 (종자검사 등), 제26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p>

	<p>제27조 (포장검사), 제28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29조 (종자검사 등) 제30조 (보증표시 등), 제31조 (보증서의 발급)                  제32조 (사후관리시험), 제33조 (보증의 실효)                  제34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5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p>	
<p>제 5 장                  종자의                  유통 관리</p>	<p>(제36조~제47조)</p>	<p>제36조 (종자업의 등록), 제37조 (종자의 판매 신고)                  제38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제39조 (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제40조 (수입적응성시험), 제41조 (종자의 수입 추천)                  제42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제43조 (유통종자의 진열·보관·판매의 금지)                  제39조 (유통종자의 품질검정), 제40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제44조 (종자의 유통조사 등), 제45조 (종자시료의 보관)                  제46조 (유통종자의 시험·분석 등) 제47조 (종자분쟁조정위원회)</p>
<p>제 6 장                  보 칙                  제 7 장                  벌 칙</p>	<p>(제48조~제57조)</p>	<p>제48조 (청문) 제49조 (수수료), 제50조 (수수료의 면제)                  제51조 (수수료의 반환), 제52조 (사용문자)                  제4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 (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제56조 (양벌 규정)                  제57조 (과태료)</p>

## 2. 총칙 규정 개정안

### 가. 목적 조항 정비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 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 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 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이 법은 <u>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 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 □ 개정 취지

##### ○ 종자산업 육성·지원법 취지에 맞게 일부 수정

- 목적에서 식물신품종보호관련 조항을 삭제
- 종자의 품질관리, 유통 및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관한 사항을  
정하여 종자산업의 경쟁력과 농림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함

#### □ 참 고

-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도 국가백년대계의 비전과 철학으로 육성해야 할 국가 기간산업

○ 법의 목적 조항은 대상 분야에 대한 법의 개입 취지, 목적, 필요성 등이 설명되어야 할 것인 바, 향후 종자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이념적 지표를 발굴하여 종자산업법의 목적 및 이념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목적 또는 이념을 참고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구성 검토

※ <관련 예시>

-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
-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
-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환경보전(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
-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

#### 참고 입법례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 기본이념

1.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어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

○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등을 육성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

-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통일 대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 정부는 남북한 간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
- 통상 및 국제협력
  -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
- ❖ 친환경농업육성법
  -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

## 3.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

※ “농업유전자원”이란 종자·영양체·화분·세포주·유전자·잠종·종축·정액·세균·진균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

## ○ 조사·등재 등

-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유전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유전자원
-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을 작성
- 작성된 목록의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

## ○ 분석·평가 등

-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

## ○ 분양승인 및 제한

-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국외반출승인 등

-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및 이용 촉진

-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
-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을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다음 사항을 심의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 기본이념

-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법

-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
  -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

※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함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함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함

o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 나. 종자 범위 확대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 (정의) 3.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u>종균(種菌)·영양체(營養體)</u> 또는 포자(孢子)를 말한다.	제 2 조 (정의) 3.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u>종균(種菌)·<u>잎, 줄기, 뿌리</u> 등 영양체(營養體), <u>묘목</u> 또는 포자(孢子)를 말한다.</u>

### □ 개정 취지

- 현행법상 종자의 정의는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균, 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함

- 즉, 현행법에서 과수 및 목본(木本) 식물의 묘종도 영양체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 묘목은 모수(母樹)의 단순 분리를 통한 영양생식, 실생묘(종자를 파종하여 키운 묘목), 접목묘(실생묘+삽목묘) 등 다양한 생식방법이 갖고 있어 영양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움
    - ※ 국내 과수묘목 종자업 등록업체는 283개소(전체 종자업의 31%)
- 또한, 국내 과수묘목 시장규모는 400억원으로 전체 종자시장의 7%, 과수묘목 종자업체는 283개소로 전체 종자업의 31% 정도 차지할 정도로 묘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묘목’을 ‘종자’에 별도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과·배·포도 위주로 연간 430만주 생산(60% 시중유통됨)
- 이에 따라 묘목을 별도 분리하여 유통중인 묘목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영양체를 잎, 줄기, 뿌리 등 영양번식하는 개체로 구체화
  - 묘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

□ 참 고

< 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의 종자 정의>

- 종자는 번식에 사용되거나 포함되는 식물의 일부와 실생묘(seedling), 삽목(cutting), 대목(stock), 구경(corm), 구근(bulb), 뿌리(root), 가지(scion), 줄기(stem), 짝(split) 등을 의미

## 다. 종자업 범위 확대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 (정의) 13. “종자업”이란 <u>종자의 생산과 판매를</u>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정의) 8. “종자업”이란 종자의 <u>생산(가공,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정 취지

- 현행법상 종자업은 종자의 생산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업태가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 대상이 됨
- 현재 종자업의 형태를 종자를 직접 채종(생산)하여 유통, 가공처리 후 유통, 수입종자를 재포장 후 유통 또는 직수입종자 유통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종자를 가공 또는 재포장하는 것은 종자유통업체가 달라지거나 원(原)종자의 품질(발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공정과정을 ‘생산’에 간주하여 법 적용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종자 가공)

: 종자의 발아속도 및 균일성을 향상시키거나 병원균을 방제하기 위한 특수 처리로서 종자프라이밍(seed priming), 종자코팅(seed coating), 펠릿화(pelleting), 종피제거 등이 있음

#### \* (종자 재포장)

: 제품을 분포장하거나 포장지를 바꾸는 등 포장을 다시하는 작업(재포장 작업에 따라 품질표시가 달라짐)

- 또한, 현행 법은 「종자업등록」에 가공 및 재포장업체가 등록·관리되지 않아 이들 공정업체의 관리소홀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벌칙)할 법적 근거가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야기된 바, 이들 공정업체도 유통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종자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사례) 창원 소재 대산종묘의 토마토(품종명:엘리트)종자 분쟁건(‘10)**

대산종묘가 품종진위가 의심되고 순도가 불균일한 토마토종자(‘엘리트’)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여 농가의 불량종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해당업체가 단순 수입업체(종자업등록 대상 아님)로 행정처분 받지 않음

- 이에 가공 및 재포장을 종자업에 추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참 고

◆ 「The seed Regulation 2002」(UK)

- 종자업(Seed Industry Activity) 정의
  - 종자의 판매(the marketing of seed other than marketing~)
  - 종자의 재포장(re-packing), 재봉인(re-sealing), 제품질표시(re-labelling)
  - 판매를 목적으로 종자를 정선 또는 가공하는 경우(cleaning, treating or other processing)

- 종자업 등록업체 현황(2010.4 기준)

연 도	계	식 량	과 수	채 소	화 훼	버 섯	빵	기 타
1998	332	11	50	162	23	70	11	5
1999	369	4	51	176	27	82	16	13

연 도	계	식 량	과 수	채 소	화 훼	버 섯	빵	기 타
2000	415	7	72	174	42	89	17	14
2001	454	9	84	175	55	96	18	17
2002	485	8	93	188	58	100	18	20
2004	571	16	117	210	78	104	20	26
2006	736	18	163	235	110	115	26	69
2007	813	25	182	249	126	123	26	82
2008	833	32	252	180	130	124	26	89
2009	819	37	250	173	121	110	30	98
2010	950	35	280	196	153	128	31	127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육성 책무 명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취지

- 현재 종자산업의 연구·개발 보급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사실상 전담하여 일괄 추진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종자산업을 육성·보급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음

- 종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혼재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의무를 선언함으로써 종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의무 명시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은 산업진흥법에서 구체적인 관련 업무 근거규정에 앞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선언적 조항(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 참 고

참고 입법례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 3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지자체 원종장 현황>

각도별	장 직급	정 원	인원구성	규 모	주요 임무 및 업무내용
제주도원 농산물원종장 (2실장, 연구 개발국 소속)	4급 연구관 지도관	19	연구직 13 지도직 1 기능직 5	65ha	- 씨감자 생산 공급 - 채소 종묘 생산 공급 - 과수 우량대목 생산 공급 - 맥류 등 발작물 품종 선발 보급 - 새소득원 특·약용작물 연구
경기도원 종자관리소 (원장직속)	4급 (농업· 연구관)	26	연구직 3 농업행정 7 기능직 16	75ha	- 벼 원종 보급종 생산공급 - 전작 원종 보급종생산 - 유지류 종자 생산공급
강원도원 농산물원종장 (4담당, 사업소)	4급 (농업· 연구관)	16	연구직 2 농업행정 7 기능직 7	44ha	- 벼 원종 보급종 생산 - 전작 원종 보급종생산 - 잡곡, 옥수수 종자생산 - 양잠 업무
충청북도 농산사업소 (2과 6담당)	4급 (농업· 연구관)	32	연구직 4 농업행정 9 기능직 19	27ha	- 벼 원종 보급종 생산공급 - 전작 원종 보급종생산 - 유지류 종자 생산공급
충남도원 농산물원종장 (원장직속)	4급 (농업 서기관)	19	연구직 3 농업행정 5 기능직 11	67ha	- 벼 원종 보급종 생산공급 - 전작 원종 보급종생산 - 유지류 종자 생산공급

각도별	장 직급	정 원	인원구성	규 모	주요 임무 및 업무내용
전북도원 종자관리소 (3담당, 원장직속)	4급 (연구관)	19	연구직 6 농업행정 2 기능직 11	97ha	- 벼 원원종 원종 생산 - 전작 원종 보급종생산 - 양잠 업무
전남도원 농업자원 관리소 (1본소 2지소 원장직속)	4급 (농업· 연구관)	15	연구직 1 농업행정 7 기능직 7	97ha	- 벼 원종 보급종 - 두류 원종 보급종생산 - 맥류 원종 보급종생산 - 잡곡류 종자 증식
경상북도 농업자원 관리원 (4담당)	4급 (농업 서기관)	19	연구직 4 농업행정 5 기능직 10 (무기계약 8)	62ha	- 벼 원종 보급종 - 전작 원종 생산 맥류, 콩, 유지작물 등 - 토종작물 종자 증식
경상남도 농업자원 관리원 (도 사업소)	4급 (농림 수산· 농업 연구관)	16	연구직 3 농업행정 5 기능직 8 상근인력 3	55ha	- 벼 원종 보급종 - 전작 종자 생산 맥류, 콩, 고구마 등 - 토종작물 종자증식

마. 종합계획 수립·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 4 조 (종자산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장

현 행	개 정 안
	<p>기적인 종자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li> <li>2. 종자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li> <li>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li> <li>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li> <li>5. 종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li> <li>6.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시책 지원방안</li> <li>7. 종자의 품질 향상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개정 취지

-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종합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근거 마련
  - 종합계획에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종자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종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시책 지원방안, 종자의 품질 향상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이 포함되도록 함
- 종합계획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를 두지 않음
  - ※ 종합계획 수립시 별도의 위원회 심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 입법례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 육성법」, 「낙농진흥법」, 「과학관육성법」 등이 있음

□ 참 고

참고 입법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친환경농업 육성법

- 제 6 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민간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4 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 조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2.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
3.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계획
4. 제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계획
5. 신약 등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지원계획
6.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계획
7.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8.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조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제약산업육성·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3.31] 제 5 조

제 6 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차관급 공무원과 제약산업 육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약산업육성·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낙농진흥법

제 3 조 (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낙농 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원유 및 유제품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4. 원유의 품질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유의 집유, 수송 및 저장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6. 학교 우유 급식, 소비 홍보 등 유제품의 수요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5 조 (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바. 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 5 조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

현 행	개 정 안
	<p>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 개정 취지

-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참 고

참고 입법례

❖ 말산업 육성법

제 6 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7조 (통계 및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7 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규정 개정안

#### 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 6 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u>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u></p> <p>2. <u>종자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p> <p>3. <u>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련 연구소·단체 또는 종자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개정 취지

- 육종 전문가 고령화와 전공학생 부족으로 종자업계 구인난 직면
  -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성장국의 F1 교잡육종 종자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국내 육종 전문가 양성 필요
  - 육종특화대학에 장기지원함으로써 육종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할 필요

- 종자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 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

□ 참 고

<b>참고 입법례</b>
---------------

❖ 외식산업 진흥법

제 7 조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외식산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소,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5.12.23, 2008.2.29>
  - ③ 제2항에서 유통연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2009.4.1>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당해 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음악산업 인력수급의 균형 및 우수 전문인력 확보
2. 산·학·관의 협력기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4.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업계 진출기회 확대
6. 그 밖에 음악산업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 9 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러닝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자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무역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민간 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p> <p>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2.29&gt;</p> <p>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 나.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 7 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u></li> <li>2. <u>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u></li> </ol>

현 행	개 정 안
	<p>3. <u>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u></p> <p>4. <u>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 교류</u></p> <p>5. <u>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u></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개정 취지

○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참고 입법례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 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8 조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다.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을 위한 지원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 8 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개정 취지

#### ○ 국제협력 및 대외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참 고

참고 입법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 9 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19호, 2010. 2. 4,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500-1650

제 9 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4조 (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융합 촉진법

제30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1조 (국제협력) 정부는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공동조사·연구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위해(環境危害) 농업활동 및 자재교역의 억제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라.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그에 대한 지원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 9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u></li> <li>2. <u>지역특화 농림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u></li> <li>3. <u>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u></li> <li>4. <u>종자생산 농립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u></li> </ol>

현 행	개 정 안
	<p>5. <u>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개정 취지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종자산업기술보급등사업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참 고

※

참고 입법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p>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 7 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li> <li>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체험사업의 실시</li> <li>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작목(作物)·작부(작부) 등에 관한 상담</li> <li>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li> <li>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li> </ol> <p>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

마. 농림어가, 종자업자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0조 (재정 및 금융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정 및 금융지원 등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개정 취지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생산 농림어가, 종자업체 등에 대하여 종자의 개발·생산·보급·유통 등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자생산 농림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종자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등

□ 참 고

참고 입법례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1조 (금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세제·금융지원 등)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가에 건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p>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p> <p>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 공간정보산업 진흥법</p> <p>제11조 (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p> <p>❖ 관광진흥법</p> <p>제76조 (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lt;개정 2008.2.29&gt;</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

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설립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11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설립)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종자산업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 <u>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u></li> <li>2. <u>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u></li> <li>3. <u>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u></li> <li>4. <u>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u></li> <li>5. <u>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u></li> <li>6. <u>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u></li> <li>7. <u>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u></li> <li>8. <u>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u></li> </ol>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개정 취지

- 종자관련 정부조직이 국립종자원, 농진청이 있으나 민간업체의 산업화 육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단체가 없는 실정
  -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화·전문화되어가는 종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담지원 조직(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이 필요
    - ※ 기존의 정부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고, 필요하다면 과도기로서 기존의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법상 각호의 종자산업 진흥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진흥센터는 종자산업 지원정책의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위탁을 통하여 정부의 일부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체제 구축

<사례>

- 바이오산업진흥센터( '09년까지 5,152억원 투자)
  - 전국에 지역별 바이오산업진흥센터(25개소)를 설립하여 산업인프라,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 지원(지식경제부)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산업융합지원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 이에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법제도·정책 연구개발 기타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 근거 마련
  - 비영리 법인으로서 종자산업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인력, 시설 등을 갖춘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참 고

참고 입법례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 (소상공인진흥원) 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개발
    2.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3. 소상공인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소상공인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6.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⑥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⑤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④ 정부는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4.22>
  -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2.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 3. 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 4. 기상 관측 장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대민(對民)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
  - 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이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정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 ⑧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⑨ 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6 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7조 (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 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 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 라.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업무에 대한 지원
  - 마.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업무에 대한 지원
  - 바.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p>사.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p> <p>아.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p> <p>자.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p> <p>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p> <p>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p> <p>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제28조 (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p> <p>④ 산업진흥원은 제27조제11호나목에 따라 산업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p> <p>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p> <p>제29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법령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p> <p>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p>
------------------------------------------------------------------------------------------------------------------------------------------------------------------------------------------------------------------------------------------------------------------------------------------------------------------------------------------------------------------------------------------------------------------------------------------------------------------------------------------------------------------------------------------------------------------------------------------------------------------------------------------------------------------------------------------------------------------------------------------------------------------------------------------------------------------------------------------------------------------------------------------------------------------------------------------------------------------------------------------------------------------------------------------------------------------------------------------------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 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3.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u></p> <p>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 □ 개정 취지

- 현재 종자업체 규모의 영세성으로 품종개발 R&D 투자여력이 미흡
  - 등록업체 중 10인이하 규모의 소규모업체가 97%

- 품종개발에 장기간 소요되고, 성공의 불확실성으로 민간 육종연구 기반 취약
- 종자업체의 육종연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육종연구를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 해외사례 : 네덜란드 Enkhuizen(엔카우젠)지역에 종자육종·가공처리 전문지역 형성 다국적 종자기업 및 인코텍(종자가공 전문회사)이 입주
- 현재 추진 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Seed Valley)>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11~'15 (5년간), 745억원 추정
- 지 역 : 전북 김제 54ha
- 내 용 : 민간의 종자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 지원

- 산업계, 연구계가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민간육종연구단지(일명 Seed Valley) 지정 근거로 활용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소규모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

□ 참 고

참고 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나노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8조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 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제 5 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의한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구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아. 중소종자업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3조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 개정 취지

- 국내 종자업체 대부분이 고용인 10인이하의 중소종자업자이며, 이들을 통해 우수한 신품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등록업체 950개 업체('10년 기준) 중 97%가 10인이하 고용
- 개인육종가의 경우 신품종 등록 또는 해외출원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확한 관련 근거 필요
  - \* 지원내역(품종당) : 신품종 등록시 300만원, 해외출원시 500
- 중소종자업자들에게 지원함으로써 품종육성을 도모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기반 구축에 기여할 필요
- 이에 중소종자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참 고

### 참고 입법례

####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9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기업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참고】 신제품의 사업화 촉진 등 지원 방안

※ 아래는 발명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제안한 것으로 향후 시행령이나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개인육종가, 소기업 등의 품종보호출원 지원

- 개인육종가, 소기업 등이 품종보호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조치 마련

※ 발명진흥법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품종보호출원 상담센터 등 설치운영

- 품종보호출원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는 상담센터 운영 근거 마련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우수 신품종 사업화 지원

- 우수한 신품종으로 평가된 식물신품종에 대해 조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발명진흥법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 등의 발명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화 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신품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센터 등 근거 마련

※ 발명진흥법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p>사업화알선센터를 둔다.</p> <p>②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p>□ 기타 다양한 보호사업, 해외센터 등</p> <p>※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산업재산권의 보호)</p> <p>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 발명진흥법 제50조의3 (해외산업재산권센터)</p> <p>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

### 자. 종자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	<p>제14조 (단체의 설립) ① 종자업자는 <u>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u>법인으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취지

- 현재 “한국종자협회” 등이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를 종자산업법에 두어 그 역할을 제고하고 활성화할 필요
  - 유사 입법례에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항임(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임)
  - 이는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법상 단체로 그 위상과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음(규제신설 사항이거나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 종자관련 산업체의 조직화 및 활성화하고 종자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설립의 법적 근거
  - 산업계 등과의 협력과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 업체간 과열·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훼손 방지 등 기대
  - 사업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업체간 과열·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훼손을 방지하고,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 필요
-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 다만, 법문상 구체적인 업무 명시는 입안 추진시 장애요인이 될 수 있

음(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국회의결과정에서 위탁업무 등을 규정한 협회설립 근거 삭제된 사례)

□ 참 고

참고 입법례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0조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설립) ① 지식정보보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는 지식정보보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지식정보보안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 (협회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텐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콘텐츠제작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 품종목록의 등재 규정 개정안

◇ 분법에 따른 재편

- 현행 종자산업법 “제3절 심사(제33조), 제3장 품종의 명칭(제108조~제109조, 제111조~제113조)”은 신품종보호 절차와 밀접한 절차 조항이므로 본 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

### 가. 품종명칭 등록(제3장) 규정은 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조정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08조 (품종명칭) ① 다음 각 호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p> <p>1.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p> <p>2.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p>	<p>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p> <p>① &lt;생략&gt;</p> <p>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신품종보호법 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08조》부터 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lt;생략&gt;</p>

현 행	개 정 안
<p>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p> <p>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제37조 (종자의 판매 신고) ①~② &lt;생략&gt;</p> <p>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신품종보호법 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08조》부터 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lt;생략&gt;</p>

□ 개정 취지

-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등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며, 종자산업법에 품종명칭의 등록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신품종에 대한 품종명칭, 품종목록 등재를 위한 품종명칭, 생판신고를 위한 품종명칭제도가 현행 종자산업법에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종자산업법을 신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으로 분리함에 따라 품종명칭에 관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 제기
- 품종명칭에 관한 등록요건, 출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절

- 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신제품보호의 요건, 출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될 신제품보호법에서 규정
- 다만 품종목록에 올리기를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의 품종명칭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서 근거규정을 두도록 함
  - 이를 통해 품종목록 등재를 위한 품종명칭, 생판신고를 위한 품종명칭의 근거조항을 종자산업법에 두고, 품종명칭의 등록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신제품보호법에서 규정하여 보다 간결한 법률체계로 구성
  - 따라서 품종명칭과 관련하여, ‘국가품종목록등재(현행 제115조)’나 ‘생산·판매신고(현행 제138조)’를 하려는 종자는 1개의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절차는 신제품보호법을 따르도록 함

□ 참 고

□ 품종명칭의 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후1314 판결)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26조, 제108조 제1항),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8조 제2항),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109조 제9호), 품종명칭이 등록된 경우, 누구든지 등록된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

보급·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고,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으며, 품종명칭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112조),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같은 법 소정의 품종보호의 대상이 된 품종을 상품으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거래계에서는 그 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으로 그 상품을 지칭할 수는 없고,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을 그 품종의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 표장을 그 품종의 상표로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려는 종자산업법 제109조 제9호의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

## 나.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등의 생산대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21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 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u>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림수산물의</u>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p><u>이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u>농어민</u>

개정 취지

-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하는 품종의 종자생산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함

참 고

참고 입법례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 8 조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 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한해(旱害)·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다. 국가생산 공급종자와 관련한 피해 보상 및 지원 근거 마련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① 생략
< 신 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 그 피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장애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 농림수산물 안정적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로 인해 농어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확산 방지 및 조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 취지

- 정부에서 생산·공급한 종자가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장애 등으로 피해가 발생
  - 국가가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종자산업법 제121조)에 기상이변 및

기타 생리적 장애로 종자 품위(활력)저하 등의 종자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종자사고 : 밀 보급종 받아불량 사태('10. 10월), 벼 보급종 받아불량 및 생육저하('11. 4~5월)

- 국가 품종목록등재 품종의 종자를 정부에서 생산·공급 지원하고 있으나, 종자 피해발생 시 지원관련규정 없음
- 소위 종자사고가 종자의 결함(불량)으로 인한 경우에는 정당 보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령으로 세부사항을 정함
- 한편 생명체인 종자의 특성상 분명한 종자의 결함이 아니더라도 이 상기후 등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일정한 지원 근거조항 필요

- 피해보상과 피해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 신설
  - (피해보상)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지원)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종자사고에 따른 피해원인 규명 및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참 고

참고 입법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 4 조 (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한해(旱害)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 10. 그 밖의 지원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稚魚代金)
      -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어자금(營漁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

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종자의 보증 규정 개정안

### 가. 과수묘목 보증관련 검사서류 보관기간 연장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31조 (보증표시 등) ① . . . . .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	제30조 (보증표시 등) ① -----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u>

개정 취지

- 현행 종자산업법은 보증검사 작물의 종자보증 관련 검사서류를 만

일의 종자분쟁에 대비하여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작물별 구분없이 3년 보관)

※ 종자보증이란 : 당해품종의 종자가 적법한 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되어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이 검증된 종자임을 보증하는 제도로, 종자관리사에게 1회 이상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 보증종자는 작물·생산단계별로 순도·발아율·피해립·병해립 등에 대한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최소규격이 규정되어 있음.

○ 과수묘목의 경우 식재한 후 5년이 지나야 묘목(종자)의 불량 여부가 확인 가능하므로 작물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3년 규정에 보완이 필요함

- 과수 보증묘목의 분쟁발생시 종자검사서류가 확보되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원인규명에 활용이 가능함

○ 이에 과수 묘목의 검사서류는 5년간 보관토록 규정

## □ 참 고

### ◆ 「과수원에 총론」(향문사) 中

꽃눈이 형성되는 부위는 과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와 같은 꽃눈착생 특성을 결과습성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수의 종류 및 품종별 결과습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사과나무 : 전년에 자란 1년생 가지의 겨드랑눈이 2년째 자라 가지의 끝에 꽃눈을 착생하는 단과지, 중과지 또는 장과지가 되거나 꽃눈이 없는 자람가지가 된다.

일반적으로 1년생 가지의 선단 가까운의 눈들은 자람가지로 자라고, 중간부의 눈들이 꽃눈을 가지는 가지로 자라며, 기부 눈들은 중간눈이 되거나 숨은눈의 상태로 남는다. <이하생략>

- 2) 배나무 : 결과습성이 사과나무의 경우와 같지만 꽃눈의 형성이 용이하고 겨울꽃눈이 쉽게 착생하며~ <이하생략>
- 3) 복숭아나무 : 당년생 가지의 잎겨드랑이에 꽃눈이 착생하여 다음해에 개화한다. 꽃눈이 달린 가지의 길이에 따라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 등으로 구분되는데, 단과지와 중과지는 수명이 짧고, 또 장과지에 좋은 과실이 잘 달리는 품종이 많으므로 장과지가 매년 많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으면 해가 거듭됨에 따라 결실부위가 수과 외부로 밀려나기 쉽다
- 4) 살구나무·매실나무·자두나무 및 양앵두나무 : 복숭아나무와 결과습성이 비슷하지만~ <이하생략>

## 나. 보증종자판매와 생·관신고 조항 분리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38조 (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121조에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p> <p>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p> <p>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p>	<p>제35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와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3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u>매입하는 경우</u></p> <p>3. <u>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u></p> <p>4. <u>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u></p> <p>5. <u>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u></p> <p>6. <u>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2. <u>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u></p> <p>3. <u>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u></p> <p>4. <u>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u></p> <p>5. <u>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u></p> <p>6. <u>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u></p>	<p>제37조 (종자의 판매 신고)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 외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u></p>

현 행	개 정 안
<p>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p> <p>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p>	<p>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u>신품종보호법 제0조제1항(현행 종자산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u></p> <p>2. <u>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u></p>
	<p><u>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내용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방법,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 개정 취지

- 현행 종자산업법은 법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에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종자 및 유통종자 판매 관련사항을 같은 조항에 규정
  - ①,②항 :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 및 장관이 고시한 품종 판매시 종자보증 후 유통토록 규정
  - ③항 : 출원공개 및 품종목록 등재품종 외 종자 판매시 「품종의

생·판신고」 후 유통토록 규정

※ 현행 법 제138조는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장관이 고시한 품종 종자 포함) 판매시에는 종자 보증받은 후에 유통하여야 하며, 출원공개 및 품종목록 등재 외 종자판매시에는 ‘품종의 생·판신고’후에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 제138조는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종자(장관이 고시한 품종 종자 포함) 판매시에는 종자 보증받은 후에 유통하여야 하며, 출원공개 및 품종목록 등재 외 종자판매시에는 ‘품종의 생·판신고’후에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성격이 상이한 ‘종자보증’과 ‘생·판신고’를 같은 조항에 묶은 것으로 각 조항을 관련 항목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 분리할 필요

○ 현행 법 제138조(종자의 판매)를 ‘보증종자 판매’와 ‘품종의 생·판신고 종자’로 구분하여 규정

- 보증종자와 생·판신고종자(보증외 종자)의 판매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자 생산·유통업체가 관련 법 조항을 보다 쉽게 이해 가능

## 6. 종자의 유통 관리 규정 개정안

### 가. 생산판매 변경신고 의무화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 (종자의 판매 신고)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내용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76조 (과태료)                  ②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신 설&gt;</p>	<p>제57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 각 호를 위반하여 종자를 진열·보관·판매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개정 취지

- 신고한 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내용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참 고

참고 입법례

❖ 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제31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 나. 품종목록 등재작물의 단순 수출·입 신고 폐지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40조 (종자의 수출·수입) ① 품종 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삭제)</p>	<p>제39조 (종자의 수입 및 유통제한)</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p>	

□ 개정 취지

- 국가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종자의 수출·수입시 농식품부장관에 신고해야 함 (신고대상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종자 수출·입 실적>

연도별 유형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건)	16	19	23	18	14
수입	11	16	16	11	7
수출	5	3	7	7	7

- 무분별한 유전자원 유출 및 외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국가품종등록 등재 대상작물 종자의 수출입신고 의무화
- 벼 등 국가품종등록 등재 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보증서를 첨부하여 신고

● 수출입 신고 절차



○ 그런데 주요 식량작물은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5대 식량작물 종자 수입적응성 확인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종자관리요강 제30조)

- 또한, 타 법률에서도 국외 반출입하는 식물(종자 포함)을 관리하고 있어 민원인이 동일건에 대하여 중복 신고 하는 문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

제 8 조 (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국외반출승인 등) (국외반출승인 등) ①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수출·입 신고 폐지

## □ 참 고

## 참고 입법례

##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 조 (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외반출승인 등) ①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

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물방역법

제10조 (수입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제2항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 (수입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

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구한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다. 유통종자의 진열·보관·판매금지의 적용 범위 확대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44조 (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 제143조에 따른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p>	<p><u>제43조 (유통종자의 진열·보관·판매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무등록업자가 생산한 종자</u></li> <li>2. <u>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u></li> <li>3. <u>제52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u></li> <li>4. <u>기타 이 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u></li> </ol>

현 행	개 정 안
	는 종자

□ 개정 취지

- 현행 종자산업법에는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는 판매대에 진열, 보관 및 판매금지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매자가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할 우려 있음
  - 또한 일반 소비자가 불법·불량종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판매자가 위법종자를 취급(진열·보관)하지 않는 적극적 대처방안 필요

◆ 위반사항별 유통조사 실적

위반유형 연 도	무등록 종자업	무보증 종자 판매	생판 미신고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종자 판매	발아보증시한 경과 종자 판매	기 타 (가격 미표시)
2007년	2	12	21	15	13	55
2008년	1	3	8	10	9	48
2009년	8	3	5	66	35	86
2010년	3	3	5	79	48	33

- 종자판매자가 판매 또는 진열·보관을 금지해야할 사항에 대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
  - 발아보증시한경과 종자, 무등록 종자업자가 생산한 종자, 생·판 미신고 종자, 품질 미표시 종자 등을 판매·보급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

※ 진열·보관의 금지는 판매목적인 경우로 제한하여 과잉규제 지양

□ 참 고

참고 입법례

❖ 농약관리법

제21조 (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1.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이나 원제 또는 제품
2.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거짓으로 표시한 농약등
3.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곤란한 농약등
4. 제20조에 따른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등
5.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할 수 있다.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3. 부패·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

<p>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줄 것</p> <p>4. 판매사레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p> <p>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p>
-----------------------------------------------------------------------------------------------------------------------------------------------------------------------------------------------------------------------------------------------------------------

## 라. 유통조사 규정 정비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45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조사하게 하거나 (이하 생략)	제44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이하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판매중지 하거나 수거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하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반환 하거나 폐기할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이하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하 생략)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하 생략)

### □ 개정 취지

- 농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
- 종자의 유통조사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효율적인 유통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 독일의 경우 지방정부가 종자보증 및 유통관리 책임(유통종자를 무작위로 샘플하여 포장검사(품종진정성검사)와 종자품질(순도, 발아율, 건전도)을 검사하며 포장검사와 시료채취는 자격을 부여한 전문 검사원과 재료채취원이 수행)
- 이에 유통조사 권한을 농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

□ 참 고

참고 입법례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시료수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제1항·제3항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료수거를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수거 또는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저장·운반·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 비료관리법

제19조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3.31, 2003.12.11, 2007.8.3, 2008.2.29>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 농약관리법

제 7 조 (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를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제수가(防除酬價)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7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방제질서를 어지럽힌 데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 검역소독 처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를 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마. 시험·분석 지원대상 확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48조 (유통종자의 분쟁) ①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당 품종의 <u>종자를 보증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u> 요구할 수 있다.</p>	<p>제46조 (유통종자의 시험·분석 등) ① ----- <u>종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 또는 종자업자에게</u>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u>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와 제147조에 따라 보관·관리 중인 종자시료의 대비시험을</u> 신청할 수 있다.</p>	<p>② ----- <u>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에 대해 필요</u>한 시험·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u>대비시험을</u> 신청할 때에는 (이하 생략)</p>	<p>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u>시험·분석을</u> 신청할 때에는 .</p>
<p>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닐 경우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u>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u>대비시험의</u>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④ ----- ----- ----- ----- ----- <u>시험·분석의</u>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⑤ 생략</p>	<p>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u>대비시험</u>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대비시험을</u>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p>	<p>⑥ ----- <u>시험·분석의</u>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시험·분석을</u> 한 후 ----- -----</p>

현 행	개 정 안
<p>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u>대비시험</u>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⑦ ----- ----- <u>시험·분석</u>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60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49조 (수수료) ①</p> <p>7. 제46조제2항에 따라 <u>시험·분석</u>을 신청하는 자</p>

□ 개정 취지

- 종자분쟁과 관련하여 현행은 “보증종자”만 농식품부장관에게 대비 시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종자와 관련한 분쟁의 대부분은 ‘보증종자’ 이외 유통종자에서 발생하고 있음
  - \* 생산·수입 판매 신고 현황 : 총 37,568건 중 식량작물 370품종(1%)
  - 종자분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시험·분석 지원 중
- 종자분쟁이 품종순도, 발아율, 건전도, 생육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보증종자이외 다른 일반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이 필요

< 국립종자원 의뢰 종자 시험·분석실적 >

- 품종진위 검정 : ‘07) 1건 → ’08) 5 → ’09) 5 → ’10) 7

- 발아율 검정 : '07) 1건 → '09) 3 → '10) 1
- 병해, 순도 : '07) 1건 → '08) 5 → '09) 2 → '10) 2

○ 이에 따라 대비시험 대상을 현행 '보증종자'에서 '모든 유통종자'로 확대하되,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함

### 바. 종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47조 (종자분쟁조정위원회)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u></p> <p>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u></p> <p>2. <u>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u></p>

현 행	개 정 안
	<p>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p> <p>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p> <p>5. 그 밖에 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0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49조 (수수료) ①</p> <p>8. 제47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p>

개정 취지

○ 현재 종자분쟁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반 공산품제품 등과 같이 분쟁조정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계

- 종묘분쟁의 지속적인 증가

※ 분쟁(소비자원): (06)30건⇒(07)37건⇒(08)124건(농림어업분쟁의 66%)

- 표시사항과 다른 불법, 불량 종자 유통

- 신고품종과 유통품종 유전자 패턴 다름: 수박 79품종중 11품종(08 7, 09 4)
- 역병저항성 과대표시: 130품종중 46품종, 32개사중 7개사 50%이하
- 바이러스 감염종자 유통: 멜론신고종자 MNSV, SqMV 17.7% 감염(40/226)

-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종자의 생산, 판매, 유통 등에 관한 분쟁(주로 종자결함에 대한 소비자 피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종자산업법상 종자위원회와 기능상 구분됨

- 즉, 현행법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는 종자관련 장관자문, 통상 실시권 설정에 대한 재정의 심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대상으로 하며, 종자 자체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분쟁은 그 대상이 아님

○ 종자분쟁에 대해 현행 소송구조상 소송기간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과다소요로 소비자의 이익보호가 어려움

- 따라서 종자분쟁은 전문가의 식견이나 검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도입할 필요

- 종자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

-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비용의 측면에서 소송절차에

### 비해 경제적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소송에 비해 법원의 간섭 및 통제가 적고, 그 절차의 진행이 소송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이며, 법규에 의한 형식적 해결보다 분쟁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

### □ 참 고

#### 참고 입법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8 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 ②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 유통산업발전법

##### 제 7 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2009.4.1, 2010.11.24>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24>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 4 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인터넷주소 또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 6 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3.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9, 2007. 5.17, 2008.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⑥ 위원의 자격 및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 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의 임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임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 4.2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6 장 분쟁조정

-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분쟁의 조정) 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콘텐츠 관련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2조 (자료 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の内容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조정 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 (비밀 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량종자로 인한 분쟁사례】**

<대법원사례>

1989.11.14. 선고 89다카15298 판결 (감자종자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감자종자를 매수하여 식재하였는데 거기에서 자란 감자는 잎말림병과 검은무늬썩음병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잎말림병에 감염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감자종자를 매수(금 1,145,000원)하여 들인 식재비용(인건비와 비료대 금 956,100원) 수확비용(인건비, 운반비, 경운기사용비, 포장상자대금 905,500원) 감자밭의 임대료(금 1,593,500원)에서 원고가 수확한 감자의 판매대금 (금 1,401,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98,460원 의 절반인 금 1,599,23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원고가 제반비용을 정상적으로 들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절반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당원 1975.12.30선고 75다1543 판결 참조).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겠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소비자원 분쟁사례>

● 포장지 표시와 다른 케일 피해 보상 요구

청구인은 2003. 3. 29. 피청구인이 채종판매한 케일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정식하였으나 종자 포장지의 케일 모양과 다르게 성장하여 출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 바, 이는 포장지 표시와 전혀 다른 종자를 판매한 피청구인의 과실이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자포장이 잘못되었으므로 대파 종자를 파종토록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며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한 사례

● 방울 토마토 씨앗 불량으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신청인은 2007. 8. 피신청인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방울토마토 종자 ‘키스꿀’

을 구입하여 파종했으나, 설명보다 많은 단간주가 발생한 사례

< 국내 행정형 ADR 설치 및 운영현황 >

분 야	조정위원회
건설 분야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법),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주택법)
교통 분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보험수가분쟁 심의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환경 분야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원자력손해배상법)
소비자 분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료법),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분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교육 분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지재권 분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발명진흥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법),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언론 분야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동 분야	노동위원회 소속 분쟁조정위원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분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유통산업발전법), 광업조정위원회(광업법), 국

분 야	조정위원회
	가인권위원회 소속 분쟁조정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 7. 보칙 · 벌칙 규정 개정안

### 가. 수수료 근거 신설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0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제49조 (수수료) ① 7.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7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

개정 취지

- 수수료란 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경비
- 역무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경우 수수료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 근거 바람직
  - 수수료 금액은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일 필요는 없음
  -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할 것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기

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 참 고

참고 입법례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구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나. 수수료 규정 정비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 (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	제51조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u>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u>

현 행	개 정 안
한다.	<p><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u></p> <p>1. <u>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u></p> <p>2. <u>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u></p> <p>② <u>제1항단서 각 호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개정 취지

○ 수수료 관련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비

- 수수료 반환은 청구에 따르며, 청구권 실효기간 설정(1년 또는 3년)

참 고

참고 입법례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우편대체법

제19조 (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 벌칙 및 과태료 조항 개선

###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73조 (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p>	<p>제55조 (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p>
<p>2.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p>	<p>1. 제31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p>
<p>3. 제1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p>	<p>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p>
<p>4.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p>	<p>&lt;삭 제&gt;</p>
<p>5.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7. 제1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4.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8.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삭 제>
9. 제1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5.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0. 제148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17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제5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13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

현 행	개 정 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지 아니한 자
3.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삭 제>
<신 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신 설>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1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이를 위한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7. 제4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 각 호를 위반하여 종자를 진열·보관·판매한 자
<신 설>	2.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82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li>3.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li> <li>4.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li> <li>5.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p>	<p>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p>

현 행	개 정 안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개정 취지

- 형벌에 편향된 법체계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처벌대상으로 취급하고, 일상생활의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해도 전과자로 기록되어 취업·해외여행·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형벌의 과잉화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러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법령 개선작업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
  - 신고·보고, 검사·조사, 보관·게시, 유사명칭 사용 등 경미하고 형식적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현재의 입법추세임
  -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거나 먹거리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유지함
- 대체로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적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친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다수 국민의 전과자화를 막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과태료 처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고의무위반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허가 또는 등록 사항 변경, 사업 등의 양도·양수·승계, 법정 고용의무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임면, 기타 신고 또는 신청

- 장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위반
- 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위반 등
- 허가증·등록증의 반납불이행
- 보고·자료제출·출석답변 또는 통지 등의 명령위반, 정기보고 등의 불이행
- 검사·조사 또는 출입·검사 등의 기피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 정부투자·출연기관 기타 특수법인 등의 등기 또는 공고의 해태, 시정·감독 등 명령위반
- 겸직금지위반
- 조사·측량 등을 위한 토지에의 출입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 본의무 이행 후 그 부수의무의 불이행
- 사용료·수수료등의 요금면탈과 승인된 요금외의 요금수수
- 기타 경미하거나 수시로 부과되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위반

○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종자산업법의 형벌의 대상 중 다음의 사항들은 그 의무위반의 정도나 태양, 의무위반이 종자산업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경우 받아야 하는 보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보증이라고 하는 사법관계의 개입수단 위반의 경우임

㉡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이외의 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및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생산·수입·판매 등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

㉔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판매되는 품종의 종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한 작물의 종자가 거쳐야 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경우

⇒ 수입적응성시험이라고 하는 경미한 명령 또는 절차 위반

㉕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관계공무원이 행하는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 검사·조사 등의 기피

□ 참 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행정형벌 완화 대상 사례(일부 발췌)】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건 설· 건 축· 도시관리	국토 해양부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위반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11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 거부 등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사업장 등 출입검사에 대한 거부, 방해 등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9조 제3호, 제14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건설기계소유자 등의 보고, 검사 거부 등	건설기계소유자 등이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허위보고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5조)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의무 위반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24조 제5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단지조성사업자 등의 보고, 검사 등의 방해, 자료유출 의무위반 등	단지조성사업자 등의 보고, 검사 등의 방해, 자료유출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35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단지조성사업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과 도로사용 등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단지조성사업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과 도로사용 등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의무 위반	도시공원 수탁관리자 등이 공원관리청(시장·군수)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 이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금액을 초과 징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제54조 제3호, 제40조 제3항)	
		보고, 출입 검사의 거부 또는 방해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거부 방해 등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철도건설법 제2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분양대금 납입 방법 위반	건축물 분양대금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분양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7호, 제8조)	과태료 1억원 이하
		설계도서 비치 의무 위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11조 제2호, 제24조 제2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토지 출입 방해 등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토지 출입 방해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철도건설법 제27조 제1호, 제10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조사목적 아닌 토지출입 방해	댐 건설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방해 또는 거부의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하의 벌금(담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 10조)	
		조사목적 아닌 토지출입 방해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토지 출입 방해 등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9조 제1호, 제9 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타인의 토지에 무단 출입	하천 공사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천법 제96조 제6호, 제75조 제2항)	과태료 50만원 이하
		토지출입 방해 등 거부	토지 출입 방해, 보고 및 검사 등의 거부, 방해, 기피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시개발법 제82조 제3호, 제75조, 제64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현장조사 거부 등	현장조사 거부 등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5호, 제77조 제3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토지출입 방해 등 거부 위반	택지개발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방해, 행정청의 처분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및 명령 위반 등의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택지개발촉진법 제33조 제1호 ~ 제3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행정 안전부	유료 공중화장실 신고의무 위반	유료화장실 신고의무 위반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1조 제1항)	과태료 50만원 이하
교통운송	국토 해양부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명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 선원이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원법 제144조 제10호, 제119조 제1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공항검색에 관한 기록 작성·유지 의무 위반	공항 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호, 제29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도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의 운행제한(과적)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3호, 제59조 제1항)	
		항해사 등의 면허증 등 비치의무 위반	항해사 등의 면허증 등 비치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선박직원법 제29조, 제15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
		보장계약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2조 제2호, 제21조 제1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보장계약증명서의 반납의무 위반	계약이 유효하지 아니한 보장계약증명서의 반납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2조 제1호, 제20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선박검사증 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위반	선박검사증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 등을 소지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폐지
		선박직원의 결원보충 계획통보 의무위반	결원보충계획 미통보시 100만원 이하 벌금(선박직원법 제29조, 제12조 제2항)	과태료 50만원 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	국토해양부 장관은 보험급여	폐지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관련 검사 거부, 기피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선원보험법 제66조 제3호, 제4호, 제11조 제1항, 제2항)	
		선박소유자의 고용상황 등 보고 의무 위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선박소유자에게 고용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 등을 명할 수 있는데, 보고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선원보험법 제66조 제1호, 제2호, 제10조 제1항, 제2항)	폐지
		선주 상호보험조합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선주상호보험조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3조, 제8조 제2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승인된 유료도로 요금 이외의 요금 수수	승인된 유료도로 요금이외의 요금수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유료도로법 제26조, 제17조 제2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의무 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2조 제7호, 제15조 제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외국선박의 책임 보험 가입 증명서 비치 의무 위반	선박안에 증명서 등을 미비치 하고 국내항에 입출항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2조 제3호, 제21조 제2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운임·요금의 신고의무 위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임·요금을 신고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호, 제8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배법상 분담 유량 보고의무 위반	분담유량 보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52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2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임금대장 비치의무 위반	선박소유자가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원법 제144조 제4호, 제53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사업 약관 신고의무 위반	철도사업자의 운임·요금 신고 의무, 철도 사업약관 신고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제1, 2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컨테이너형식 승인판이 부착 되지 아니한 컨 테이너의 선박 적재 금지 위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 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 7호, 제23조 제8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 위반	통과 또는 환승 승객으로 하 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 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항공안 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보험료 공제사실 통지의무 위반	선박소유자는 피보험자의 보 수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선원보험법 제66조 제5 호, 제62조 제2항)	폐지
		휴대물품을 가 지고 내리도록 한 화물 운송 사업 자의 지시 불이행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항공안전및보안 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항 제2 호, 제17조 제1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 신고의무 위반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철도사업법 제49조 제3항 제3호, 제12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행정 안전부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5조, 제92조)	폐지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의무 위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88조)	과태료 20만원 이하
		자동차 등의 자전거도로 통행위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8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위반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3호)	과태료 20만원 이하
		취소·정지된 면허증 반납의무 위반	취소·정지된 운전면허증 반납 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과태료 2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9호, 제95조 제1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비치 의무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52조 제2항)	과태료 20만원 이하
		고속도로에서의 고장차 표지 휴대·설치 의무 위반	고속도로 운행 중 고장차 표지 휴대 및 설치 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56조 제7호, 제67조 제2항)	과태료 20만원 이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 보호의무 위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호자가 유아만을 보행케 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불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 야기	운전자가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야기시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과태료 20만원 이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기피·방해	자동차 점검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시 300만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10호, 제61조 제2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차량 정밀검사 명령 불이행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제63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금융 · 산업	국토 해양부	부동산투자자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제4호, 제23조 제4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제1호, 제3조 제4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 명칭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박투자회사법 제58조 제1호, 제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8조, 제28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5조)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기술 신용 보증 기금 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기금이 아닌 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 51조, 제49조)	과태료 700만원 이하
		한국 자산 관리 공사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13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신용 보증 기금 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자가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신용보증기금법 제49조, 제9조)	과태료 700만원 이하
		공인 회 계 사 의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공인회계사가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 6항 제2호, 제18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전자화폐 유사 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전자화폐 명칭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2호, 제36조)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은행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은행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중소기업은행법 제59조, 제8조)	과태료 700만원 이하
		한국산업은행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은행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한국산업은행법 제54조, 제7조)	과태료 700만원 이하
	지식 경제부	사업장 출입조사 거부 등 조사 거부금지 위반	공무원의 당해 사업장 등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석탄산업법 제44조 제5호, 제36조 제2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 보고 및 검사 방해	에너지다소비업자 등에 대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5조 제2호, 제66조 제1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연구개발 관련 보고의무 위반	연구개발지원과 관련한 관계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의무 위반, 조사기피시 100만원 이하 벌금(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2항, 제15조)	폐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검사에 대한 방해 등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2항)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입주 계약 변경 의무 위반	회사명, 업종 등을 변경하면서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호, 제38조 제2항)	회사명, 대표자 변경 위반에 대해서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시 입증서류 제출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호, 제31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 신고 의무 위반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과태료 2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 신고의무 위반	자유무역지역 외국물품 반입신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과태료 200만원 이하
		중소기업진흥 공단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중소기업진흥공단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제68조 제5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통행증 발급 없 이 자유무역지역 출입	통행증 발급 없이 자유무역지역 출입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호, 제52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효율관리기자재 광고시 에너지 소비효율 내용 불포함	효율관리기자재 광고내용에 에너지 소비효율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 제3호, 제15조 제4항)	과태료 5백만원 이하
		효율 관리 기 자 재의 에너지 소비 효율 표시 의무 위반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소비 효율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6조 제1호, 제15조 제2항)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한국수출입은행과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한국수출입은행법 제42조, 제7조)	과태료 700만원 이하
농수산 식품 · 의약	교육과학기술부	병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4개 항목)	병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4조, 제7조,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23조, 제6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20조, 제5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21조, 제5조)	과태료 200만원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위반	도축검사증명서 휴대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제2항 제8호, 제31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 13] 1의 라)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표시의무 위반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인증표시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8조의2 제4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어업자의 어장, 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 의무 위반	어업자의 어장, 어선 및 어구의 표지 설치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수산업법 제96조 제2호, 제60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보건 복지 가족부	식품광고시 유통 기간확인 권장 의무 위반	식품광고시 유통기한을 확인 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 법 제77조 제5호, 제29조 제1 항, 시행규칙 [별표12] 4호)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의료기기 생산 실적 등 보고 의무 위반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보고의 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 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45조 제1호, 제12조 제2항)	과태료 100만원 이하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의무 위반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6조 제6호, 제72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의무 위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96조 제2호, 제28조)	폐지
		처방전 보존의무 위반	처방전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 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 법 제96조 제2호, 제29조)	폐지
서비스	문화 관광부	신문의 편집에 규제나 간섭하는 행위 등 (10개 항목)	신문의 편집에 규제나 간섭 등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 등록 신문발행 등 경우 1년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결격자 발행인취임 등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32조, 제40조,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 제4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26조, 제41조, 제13조 제1항)	
		한국관광공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한국관광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한국관광공사법 제18조 제2항, 제6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상 장애물 제거 등의 제거 요구 거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선로 설치 등에 장애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 수도관 등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 제4호, 제42조 제1항)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전기통신사업법상 토지 일시 사용거부 및 방해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해 토지를 일시(6개월 이내)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불응한 경우 5천만원 이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하의 벌금(전기통신사업법 제 73조 제2호, 제40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 법상 토지 출입 거부 및 방해 등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출입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73조 제3 호, 제41조 제1항)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식품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관 의무 위반	식품판매업자 등의 식품 거래 기록 보관의무 위반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조제 5호,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13] 2. 가)	과태료 300만원 이하
	보건 복지 가족부	노인복지시설 입소 수탁 거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자가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관련규정에 의한 노인의 입 소·장례 수탁을 거부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노인복지 법 제59조, 제41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성병 건강진단 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의 고용	성병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고용 시 200만원 이하 의 벌금(전염병예방법 제56조 제9호, 제30조 제2항)	폐지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3] 1. 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
		영업허가증 보관 의무 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영업허가증 등 보관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3] 2. 나)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 명부 비치의무 위반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명부 비치, 관리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3] 5. 파)	과태료 300만원 이하
		출입, 검사 등 기록부 보관의무 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출입, 검사 기록부 보관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13] 1. 아)	과태료 300만원 이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한부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입소자 수탁 요청을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가족 입소보호 수탁의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3항, 제22조)	
	행정 안전부	온천시설 출입 검사의 거부, 방해 등	온천시설 출입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온천법 제3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환 경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	다중이용시설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17조 제2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소음·진동 배출 방지시설을 위한 환경기술인 미임명	소음·진동 배출시설 방지를 위한 환경기술인 미임명 시 300만원 이하 벌금(소음진동규제법 제58조 제2호, 제19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음·진동 환경 기술인의 업무 방해 및 요청 거부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 거부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소음진동규제법 제58조 제3호, 제19조 제4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수도시설에 소화전 설치 의무 위반	수도시설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5조 제10호, 제45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공 위반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5조 제6호, 제31조 제1항)	과태료 300만원 이하
		유해성심사 필요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1호, 제11조 제2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 보고서 제출명령 불이행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보고서 제출명령을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5호, 제38조 제2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
		토양 관리 대상 시설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공무원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인 주유소 및 산업시설 등의 출입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제17호,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토양 오염 개선 사업의 지도·감독 거부·방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독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 벌금(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제11호, 제19조 제1항)	과태료 200만원 이하

유 형	부 처	위반유형	처벌 내용	개 선 안
		특정도서내 행위 제한 의무 위반	특정도서내에서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식물체를 짓거나 야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8조 제1항 제12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환경기술인 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임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백만원 이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폐지
		환경측정분석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 위반	환경측정분석사 유사명칭 사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0호, 제23조)	과태료 300만원 이하

## 8.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 종자산업법(전부개정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잎, 줄기, 뿌리 등 영양체(營養體), 묘목 또는 포자(孢子)를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학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조(현행 종자산업법 제12조)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의 생산(가공,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종자산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자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종자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6.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시책 지원방안
7. 종자의 품질 향상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2 장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제 6 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종자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련 연구소·단체 또는 종자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9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림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림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및 금융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및 금융지원 등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종자산업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2.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6.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종자산업 관

런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단체의 설립) ① 종자업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올릴 대상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 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 제15조에 따른 작물의 품종을 품종 목록에 올리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신품종보호법 제○조(현행 종자산업법 제108조)부터 제○조(현행 종자산업법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려야 한다.

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9조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 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성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O조제1항(현행 종자산업법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되었을 때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았을 때
- 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되었을 때(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취소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이 있으면 그 취소결정의 등본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취소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 (품종목록의 보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중 해당 품종에 관련된 부분을 제19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 그 피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과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장애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 농림수산물 안정적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 지원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로 인해 농어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확산 방지 및 조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4 장 종자의 보증

제23조 (종자의 보증) 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24조 (국가보증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22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

15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 (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26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종자관리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제27조 (포장검사)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9조 (종자검사 등)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보증표시 등) ① 제27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29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보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는 제3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사후관리시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제34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3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와 제 22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에 안정적이고 생산에 필요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3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종자의 유통 관리

제36조 (종자업의 등록)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종자의 판매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 외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조제1항(현행 종자산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내용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신품종보호법 제○조(현행 종자산업법 제108조)부터 제○조(현행 종자산업법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방법,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조(현행 종자산업법 제82조)에 따른 보호품  
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종자업자가 제3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  
니한 경우
  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  
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7.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8. 제39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  
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
  10. 제42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1.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2. 제44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하거나 판매한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  
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이나 제2항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하면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 (수입적응성시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과 그 밖에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유통종자의 진열·보관·판매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무등록업자가 생산한 종자
2. 제3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
3. 제42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
4. 기타 이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

제44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조사 또는 품질검사를 하게 하거나 조사·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게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종자시료의 보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채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2.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유통종자의 시험·분석 등) ①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당품목의 종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 또는 종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에 대해 필요한 시험·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시험·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시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⑧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 (종자분쟁조정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조정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그 밖에 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6 장 보 칙

- 제48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자격 취소
  2. 제38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

제49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1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35조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0조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7.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7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
  9.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1조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
2.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단서 각 호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산림용 종자, 뽕나무 묘목, 연초(煙草) 종자, 수산식물 종자 및 인삼 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7 장 벌 칙

제55조 (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31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5.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이를 위한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 각 호를 위반하여 종자를 진열·보관·판매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제 5 장 향후 과제

- 농림어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는데 종자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수출전용품종, GM작물 개발 등 첨단육종 원천기술 및 실용화 기술 개발 촉진으로 세계 종자시장의 중심국으로 진입
  - 수출확대 : (현재) 0.3억\$(세계 30위권) → ('20) 2억\$(10위권 진입)
- 수입대체 품종 중점개발, 종축개량 체계 개선으로 종자·종축의 자급체계 구축
  - 수입품종 의존도가 높은 딸기, 화훼, 녹비작물, 사료작물 종자의 국내종자 점유율 제고 및 젖소, 종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 \* 딸기(43% → 90%), 국화(8% → 50%), 녹비작물(0→80%), 사료작물(7% → 70%)
- 향후 감독적, 규제적 입장에서 능동적 역할로 종자산업 적극 육성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
- 등록, 유통조사 위주의 관리업무에서 연구개발지원, 품질관리, 우수 품종 판매촉진, 시장정보제공 등 종자업계 지원강화

### 1. 우수종자·우수종자업자 지정제도 도입

-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종자 등에 대한 지정·표시 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종자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우수종자, 우수종자업자에 대한 지정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종자시장 활성화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수종자, 우수종자업자 등에 대한 지정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우수종자·우수종자업자 지정 업무는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u>&lt;1안&gt;</u></p> <p>제○조 (우수종자 등에 대한 지정·표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종자시장 활성화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수종자, 우수종자업자 등에 대한 지정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li> <li>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li> </ol>

현 행	개 정 안
	<p>④ 지정의 대상·기준·절차 등 우수종자, 우수종자업자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lt;제2안&gt;</b></p> <p>제○조 (우수종자 등의 지정·표시)</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이 우수한 종자를 우수종자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종자업자를 우수종자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종자 또는 우수종자업자는 그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 및 홍보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종자나 관련 문서 등에 지정받은 사실을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종자를 수거·반품 및 판매 중지하게 하거나, 허위의 지정표시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종자 또는 우수종자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1조의 규</p>

현 행	개 정 안
	<p>정에 따른 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우수종자 또는 우수종자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참고 입법례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상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5 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수관리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 5 조의2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 6 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 6 조의2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 7 조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의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포장·저장·거래·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 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제 7 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3.31] 제 7 조

제 8 조 (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3.31] 제 8 조

제 9 조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약기업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각종 우대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3.31] 제 9 조

제10조 (자료의 제공) ① 제7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또는 인증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2.3.31] 제10조

제11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3.31] 제11조

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규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3.31] 제12조

제13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2.3.31] 제13조

## 2. 보증증자의 사후관리 강화

- 현행 종자산업법은 국가가 생산한 종자 외 민간 종자업체가 생산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시험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장관은 실제적으로 생산대행하고 있는 종자에 대해서만 사후관리 시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다만, 민간종자업체 생산분은 종자업체가 현행 종자산업법 제131조에 따라 보증검사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농식품부장관이 법 제145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정부보급종 사후관리시험 실적>

작 물	2008년	2009년	2010년
벼	오대 외 21품종	오대 외 24품종	추청 외 24품종
보리	올보리 외 9품종	대백보리 외 8품종	새쌀보리 외 5품종
콩	대원 외 5품종	대원 외 6품종	대원 외 5품종
감자	수미 1품종	수미 1품종	수미 외 2품종

- 종자의 품질 제고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종자관리사에 의한 보증을 받은 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그 외 종자관리사 교육 강화(보수교육 등)

**3. 유통종자의 품질검정 제도 도입**

- 불법·불량종자 적발을 위해서는 종자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나 증거확보 등 적극적 단속에 한계
- 유통조사시 피조사자가 고의로 거래 장부 등 자료제출 기피
- 유통종자와 생산·판매신고시 국립종자원에 제출한 종자를 주기적으로 비교·검정하여 불법 신고종자 적발 격리 등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

- 유통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량의 유통종자를 수거하여 품종특성 및 보증·품질표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
  - 종자업체(수입업자, 재포장·재가공업체 포함) 관리 강화
  - 유통조사 사전 예고 및 홍보 강화로 정책 신뢰도 제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0조 (유통종자의 품질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일정량의 유통종자를 수거하여 매년 1회이상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검정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종자 품질검정 및 공표에 관한 방법과 세부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록

# 종자산업법 전부개정안 신규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총 칙 &lt;개정 2010.5.31&gt;</b></p> <p><b>제 1 조 (목적)</b> 이 법은 <u>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장 총 칙</b></p> <p><b>제 1 조 (목적)</b> 이 법은 <u>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調製)·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에서 식물신품종보호관련 조항을 삭제</li> <li>○ 종자의 품질관리, 유통 및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관한 사항을 정하여 종자산업의 경쟁력과 농림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li> </u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2.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p> <p>3.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u>영양체(營養體)</u> 또는 포자(孢子)를 말한다.</p>	<p>2.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p> <p>3.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u>잎, 줄기, 뿌리 등 영양체(營養體)</u>, <u>묘목</u> 또는 포자(孢子)를 말한다.</p>	<p>○ 영양체의 범위에 잎, 줄기, 뿌리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하고</p> <p>○ 묘목을 종자의 정의에 추가                      - 묘목은 영양생식, 실생묘, 접목묘(실생묘+삽목묘) 등 다양한 생식 방법을 갖고 있어 별도 구분필요</p> <p>* UPOV 종자정의 : 줄기, 뿌리, 줄기뿌리, 실생묘목, 접목묘 등으로 구체화</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4.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u>제 12조에 따른 품종보호</u>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p>4. “품종”이란 식물학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u>식물신품종보호법 제 0 조(현행 종자산업법 제12조)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는 수 있는 요건</u>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묘목에 대해 영양체에서 분리하여 묘목의 품질과 유통관리를 도모</li> <li>* 과수묘목 종자업체 283개소 (31% 차지)</li> <li>○ 종자산업법에서 분리되는 식물신품종보호법의 동일 규정 적용</li> </u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5. “<u>육성자</u>”란 <u>신품종을 육성한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u></p>	<p>&lt;삭 제&gt;</p>	<p>○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제정에 따른 관련 정의 삭제</p>
<p>6. “<u>품종보호권</u>”이란 이 법에 따라 <u>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u></p>	<p>&lt;삭 제&gt;</p>	
<p>7. “<u>품종보호권자</u>”란 <u>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u></p>	<p>&lt;삭 제&gt;</p>	
<p>8. “<u>보호품종</u>”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u>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u></p>	<p>&lt;삭 제&gt;</p>	
<p>9. “<u>실시</u>”란 <u>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10.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p> <p>11.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p> <p>12.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3. “종자업”이란 <u>종자의 생산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p>	<p>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p> <p>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p> <p>7.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p> <p>8. “종자업”이란 <u>종자의 생산(가공,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p>	<p>○ 생산·수입되는 종자를 가공처리, 재포장할 경우 종자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자업에 포함하여 관리 필요</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14.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u>제 3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u>제 4 조 (종자산업종합계획의 수립 등)</u>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자산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종자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p>	<p>○ 종자산업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명시</p> <p>○ 조문 개정</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u></p> <p><u>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u></p> <p><u>5. 종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u></p> <p><u>6.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시책 지원방안</u></p> <p><u>7. 종자의 품질 향상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u></p> <p><u>8.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u>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lt;신 설&gt;</p>	<p><u>제 5 조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u></p> <p><u>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 2 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lt;개정 2010.5.31&gt;                      제 1 절 통 칙 &lt;개정 2010.5.31&gt;                      제 3 조~ 제107조 생략                      &lt;신 설&gt;</p>	<p><u>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제 2 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lt;삭 제&gt;                      제 1 절 통 칙 &lt;삭 제&gt;</p> <p>제 2 장 종자산업의 기반조성                      제 6 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 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p>	<p>○ 제2장 육성자의 권리조항(제3조~ 제107조)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 제정</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향상을 위한 교육·연수</u></p> <p>2. <u>종자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p> <p>3. <u>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련 연구소·단체 또는 종자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lt;신 설&gt;</p>	<p><u>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b>제 7 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b>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u></li> <li>2. <u>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u></li> <li>3. <u>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u></li> <li>4. <u>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 교류</u></li> </o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lt;신 설&gt;</p>	<p>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 8 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lt;신 설 &gt;</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b>제 9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b>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u></li> <li>2. <u>지역특화 농림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u></li> </o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lt;신 설&gt;</p>	<p>3. <u>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u></p> <p>4. <u>종자생산 농립어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u></p> <p>5. <u>그 밖에 농립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u>농립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b>제10조 (재정 및 금융지원 등) ①</b> <u>농립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재정 및 금융지원</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lt;신 설&gt;</p>	<p>등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1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설립)</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종자산업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li> <li>2.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li> <li>3.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li> </ol>	<p>○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하고 첨단화·전문화되어가는 종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관련 정부조직이 국립종자원, 농진청이 있으나 산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li> <li>- 종자산업 기반조성, 전문인력양성, 유통활성화, 종자업체의 지원 및 기타 정책 지원을 위해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설립 근거 마련</li> </ul> <p>○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u></p> <p>4. <u>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u></p> <p>5. <u>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u></p> <p>6. <u>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u></p> <p>7. <u>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u></p> <p>8. <u>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u></p>	<p>기존의 법인·단체중에서 지정하도록하고,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있도록 함</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lt;신 설&gt;</u></p>	<p><u>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④ 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b>제12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b></p> <p><u>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계,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li>○ 제4조 제1항(종합계획수립)시 민간 육종연구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포함</li> </ul> <p>* 현재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사업(Seed Valley) 추진 중</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lt;신 설&gt;</u></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b>제13조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b>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간 : ‘11~’15 (5년간)</li> <li>- 사업비 : 745억원</li> <li>- 지 역 : 전북 김제 54ha</li> <li>- 내 용 : 민간의 종자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li> </ul> <p>○ 개인육종가 등 중소기업 종자업자의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육종가의 신종개발 및 신종보호 및 마케팅지원 등</li> </ul> <p>* 등록된 종자업체 950개업체 중 대부분이 고용원10이내의 중소기업 및 개인육종가임</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lt;신 설&gt;</u></p> <p>제 3 장 품종의 명칭 &lt;개정 2010.5.31&gt;</p> <p>제108조 (품종명칭) ① 다음 각 호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p>	<p><u>제14조 (단체의 설립)</u> ① 종자업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 3 장 품종의 명칭_</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마련</li> <li>-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li> <li>○ 제3장 “품종의 명칭”은 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li> <li>○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해 신청한 품종,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종에 대</li> </u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1.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p> <p>2.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p> <p>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p> <p>② 생략</p> <p>제109조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품종성능의 관리</b></p> <p style="text-align: center;"><u>&lt;개정 2010.5.31&gt;</u></p> <p>제114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 임업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09~제113조 : &lt;삭 제 &gt;</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b></p> <p>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p>	<p>하여는 현행과 같이 1개의 고유한 품종을 갖도록 하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조항을 개정안 제16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제37조(종자의 판매신고)에 규정</li> <li>○ 품종명칭 등록요건, 절차 등은 개정안에서 규정하지않고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함</li> <li>○ 식물신품종보호법으로 분리</li> <li>○ 제3장의 장명을 내용에 맞게 변경 - 품종성능관리→국가품종목록의 등재</li> </u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올릴 대상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15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 제114조에</b> 따른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리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이하 “<u>품종목록</u>”이라 한다)에 올릴 대상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p> <p><b>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 제15조에</b> 따른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리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제116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① 농림수산물부령은 제115조</p>	<p>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농림수산물부령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신제품보호법 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08조》부터 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① 농림수산물부령은</p>	<p>○ 품종목록대상은 식물신제품보호법에 따른 품종명칭을 갖도록 하고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은 식물신제품보호법의 규정을 준용</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p>	<p>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청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종 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려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17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18조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118조제2항</u>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전문개정 2010.5.31]</p>	<p>청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종 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려야 한다.</p> <p><b>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u>제17조제4항</u>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u>제19조</u>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제19조제2항</u>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b>제118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b></p> <p>① <u>제116조제4항에</u>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p>	<p><b>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b></p> <p>① <u>제17조제4항에</u>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①</b>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종의 성능이 <u>제116조제1항</u>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li> <li>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li> <li>3. <u>제113조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li> </ol>	<p>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p> <p><b>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①</b>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품종의 성능이 <u>제17조제1항</u>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li> <li>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li> <li>3. <u>식물신품종보호법 제O조제1항</u></li> </o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되었을 때</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았을 때</p> <p>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되었을 때(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u>(현행 종자산업법 제113조제1항)</u></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되었을 때</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았을 때</p> <p>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되었을 때(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취소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이 있으면 그 취소결정의 등분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취소</u></p>	<p>○ 식물신품종보호법 분리 제정에 따라 동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나열하여 명시</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120조 (품종목록의 보존) 농림수산물 품부장관은 품종목록 중 해당 품종에 관련된 부분을 <u>제118조에</u> 따른 해당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제121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 생산)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은 <u>제116조 제4항에</u>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p>	<p><u>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u></p> <p><u>제21조 (품종목록의 보존)</u> 농림수산물 품부장관은 품종목록 중 해당 품종에 관련된 부분을 <u>제19조에</u> 따른 해당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u>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①</u> 농림수산물품부장관은 <u>제17조제4항에</u>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li> <li>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li> <li>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li> <li>5.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li> </ol>	<p>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li> <li>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li> <li>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li> <li>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li> <li>5.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u>농어민</u></li> </o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lt;신 설&gt;</u></p> <p><u>제 5 장 종자의 보증 &lt;개정 2010.5.31&gt;</u></p> <p><u>제124조 (종자보증의 구분)</u> 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u>제125조 (국가보증의 대상)</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p>	<p><u>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로 인해 농어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확산 방지 및 조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u>제 4 장 종자의 보증</u></p> <p><u>제23조 (종자의 보증)</u> 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p> <p><u>제24조 (국가보증의 대상)</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p>	<p>○ 피해발생시 피해확산방지, 조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협조토록 요청함</p> <p><u>현행과 같음</u></p> <p><u>현행과 같음</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p> <p>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p> <p>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p> <p>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u>제22조</u>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p> <p>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u>제15조</u>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26조 (자체보증의 대상)</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li> <li>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li> </ol>	<p><b>제25조 (자체보증의 대상)</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li> <li>2. 종자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li> </ol>	<p><u>현행과 같음</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받으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p> <p><b>제1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b></p> <p>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p> <p><b>제26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b></p> <p>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④ 종자관리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28조 (포장검사)</b>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b>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p>	<p>④ 종자관리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p> <p><b>제27조 (포장검사)</b>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28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b>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30조 (종자검사 등)</b>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u>제128조제2항</u>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 결과에 대</p>	<p>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u>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b>제29조 (종자검사 등)</b>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u>제27조제2항</u>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 결과에 대</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31조 (보증표시 등)</b> ① 제1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0조 (보증표시 등)</b> ① 제27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29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p>	<p>○ 과수는 식재후 3년이 지나야 종자불량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검사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함</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 등은 농림수산물 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제132조 삭제 &lt;1999.1.21&gt;</p> <p><b>제133조 (보증서의 발급)</b> 농림수산물 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는 <u>제131조제1항</u> 전단에 따라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보증서를 발급</p>	<p>② <u>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u></p> <p>③ <u>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 등은 농림수산물 부령으로 정한다.</u></p> <p><b>제31조 (보증서의 발급)</b> 농림수산물 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는 <u>제30조제1항</u> 전단에 따라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보증서를</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34조 (사후관리시험)</b> ① 농림수산물 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 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에 관 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 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35조 (보증의 실효)</b> 보증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 로 본다. 1. <u>제131조제1항</u> 전단에 따른 보증표 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p>	<p>발급하여야 한다.</p> <p><b>제32조 (사후관리시험)</b> ①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 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3조 (보증의 실효)</b> 보증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 로 본다. 1. <u>제30조제1항</u> 전단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때</p> <p>2. <u>제131조제2항</u>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p> <p>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36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b> <u>제135조제3호</u>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p>	<p>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때</p> <p>2. <u>제30조제2항</u>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p> <p>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p> <p><b>제34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b> <u>제33조제3호</u>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38조 (종자의 판매 등)</b>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121조에서 농수산물에 안정적으로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li> <li>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li> </ol>	<p><b>제35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b>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와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3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li> <li>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li> </ol>	<p>○ 기존의 법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 규정 중 “보증종자의 판매” 관련 조항을 제4장 종자의 보증으로 이동</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는 경우</p> <p>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p> <p>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p> <p>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p> <p>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119조제1항에</u>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p>	<p>매입하는 경우</p> <p>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p> <p>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p> <p>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p> <p>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20조제1항에</u>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 6 장 종자의 유통 &lt;개정 2010.5.31&gt;</b></p> <p><b>제137조 (종자업의 등록)</b>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5.31&gt;</p> <p>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자의</p>	<p>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 5 장 종자의 유통 관리</b></p> <p><b>제36조 (종자업의 등록)</b>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p>	<p>○문구수정</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5.31&gt;</p> <p>③ 삭제 &lt;1999.1.21&gt;</p> <p>④ 농림수산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0.5.31&gt;</p> <p><b>제138조 (종자의 판매 등)</b>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121조에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p>	<p>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농림수산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lt;삭 제&gt;</p>	<p>○ 제1항 및 제2항은 종자보증판매 관련조항으로 제35조(보증종자의 판매 등)로 이동</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u></li> <li>2. <u>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u></li> <li>3. <u>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u></li> <li>4. <u>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u></li> <li>5. <u>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u></li> <li>6. <u>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li> </o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p>	<p>② 삭제</p> <p><b>제37조 (종자의 판매 신고)</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 외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p>	<p>○ 보증종자를 제외한 생산·수입종자의 판매 신고를 구분하여 정함</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p> <p>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전문개정 2010.5.31]</p> <p>&lt; 신 설 &gt;</p>	<p>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O조제1항 <u>(현행 종자산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u></p> <p>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입·판매를 중단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내용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종자 생산·수입판매 신고한 자가 생산중단, 신고내용의 주요사항이 변경 시는 신고하도록 함</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lt;신 설&gt;</u></p> <p>제1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u>영업의 정</u></p>	<p>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는 품 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u>신품종보호법</u> <u>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08조》</u> <u>부터 제○조 《현행 종자산업법 제113</u> <u>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방법, 절차 등은 <u>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p> <p>제38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u>영업의 전</u></p>	<p>○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명 칭의 갖도록 하고 등록요건 및 절차 등 식물신품종보호법의 규정을 준용</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li> <li>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li> <li>3.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li> </ol>	<p>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li> <li>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li> <li>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O조(<del>현행 종자산업법 제82조</del>)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li> </o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5.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p> <p>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p> <p>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p> <p>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p> <p>9. 제140조제3항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p>	<p>5. 종자업자가 제3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p> <p>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p> <p>7. 제37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p> <p>&lt;삭 제&gt;</p> <p>8. 제39조에 따라 수출·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수입하거나, 수</p>	<p>○ 기존 법률 제140조제1항 삭제(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 단순 수출입 신고 폐지)에 따른 조항 삭제</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p> <p>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 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p> <p>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p> <p>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p>	<p>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p> <p>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 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p> <p>10. 제42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p> <p>11.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12. 제44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②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40조 (종자의 수출·수입)</b></p>	<p>② 시장·군수는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이나 제2항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하면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p> <p>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9조 (종자의 수출·수입 및 유통 제한)</b>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p>	<p>○ 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 종자의 단순 수출·수입 신고제도 폐지</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p>	<p><u>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① 삭제</p>	<p>- 제도의 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하고(20건이하/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종자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순 신고의무를 폐지함</p> <p>*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제11조(수입금지 등),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10조(국외반출승인 등)</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5.31&gt;</p> <p>② 삭제 &lt;2010.5.31&gt;</p> <p>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lt;개정 2010.5.31&gt;</p> <p>④ 삭제 &lt;1999.1.21&gt; [제목개정 2010.5.31]</p> <p><b>제141조 (수입적응성시험)</b>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p>	<p><b>제40조 (수입적응성시험)</b>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p>	<p>제3항을 본항으로 이동</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5.31]</p> <p>&lt;신 설&gt;</p> <p>제1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 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p>	<p>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 <u>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u></p> <p>제41조 (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 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43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b>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u>생산 연도</u>, 포장</p>	<p>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b>제42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b>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u>생산 연도</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연월,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과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44조 (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b>  <u>제143조에 따른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본조신설 2010.5.31]</p>	<p><u>또는 포장 연월,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과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u></p> <p><b>제43조 (유통종자의 진열·보관·판매의 금지)</b>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무등록업자가 생산한 종자</u></li> <li>2. <u>제3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u></li> <li>3. <u>제42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u></li> </ol>	<p>○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종자에 대한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보관 등 금지</p> <p>- 금지 대상 구체화</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145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은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u>조사하게</u> 하거나 <u>조사에</u>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생</p>	<p>4. <u>기타 이법을 위반하여 그 유통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자</u></p> <p>제44조 (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u>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u>조사 또는 품질검사를</u> 하게 하거나 <u>조사·검사에</u>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 <u>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p>	<p>○ 유통조사의 권한을 농식품부장관 외에 시·도지사에게도 부여</p> <p>- 종자품질 제고 및 불량종자 유통방지를 위해 무게(입수), 발아율 등 품질항목에 대한 검사 근거 마련</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게 하여야 한다.</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p> <p>④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보관기</p>	<p>되고 있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게 하여야 한다.</p> <p>③ <u>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p> <p>④ <u>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p>	<p>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⑥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제146조 삭제 &lt;1999.1.21&gt;</p> <p><b>제147조 (종자시료의 보관)</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p> <p>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p>	<p>⑥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45조 (종자시료의 보관)</b>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lt;삭제&gt;</p> <p>1.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p>	<p>○ 현행 제147조제1항제1호는 신품종 보호법에 규정으로 삭제</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48조 (유통종자의 분쟁)</b> ①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당 품종의 <u>종자를 보증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u>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u>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와 제147조에 따라 보관·관</u></p>	<p>2.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p> <p>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b>제46조 (유통종자의 시험·분석 등)</b></p> <p>①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당품목의 <u>종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 또는 종자업자에게</u>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u>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에 대해 필요한 시험·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비시험’ 용어를 ‘시험·분석’ 용어로 대체</li> <li>○ 시험·분석대상을 현행 보증종자에서 모든 유통종자로 확대</li> <li>○ 종자업자에게도 시험·분석에 필요한 해당 품종의 자료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li> </u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리 중인 종자시료의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u>대비 시험을 신청할 때에는</u>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u>대비시험</u>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u>석을 신청할 수 있다.</u></p> <p>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u>시험·분석을</u>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u>따른 시험·분석</u>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u>대비시험</u>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대비시험</u>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u>대비시험</u>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⑧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u>시험·분석</u>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시험·분석</u>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u>시험·분석</u>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⑧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한 피해</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5.31]</p> <p><u>&lt;신 설&gt;</u></p>	<p>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b>제47조 (종자분쟁조정위원회)</b> ① <u>농림수산물부장관은 종자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u></p> <p>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u></p>	<p>○ 종자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종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p> <p>- 사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에 따른 종자분쟁 해결의 비효율 방지</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u>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u></li> <li>2. <u>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u></li> <li>3. <u>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u></li> <li>4.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u></li> <li>5. <u>그 밖에 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li> </o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 8 장 보 칙 &lt;개정 2010.5.31&gt;</p> <p>제158조 (종자위원회)~제158조의8(생략)</p> <p>제159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⑤ <u>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⑥ <u>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 6 장 보 칙</p> <p>&lt;삭 제&gt;</p> <p>제48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p>	<p>○ 종자위원회, 품종보호권의 침해분쟁 등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조항임</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나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자격 취소</li> <li>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li> </ol>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60조 (수수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li> <li>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려는 자</li> <li>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li> </ol>	<p>나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6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자격 취소</li> <li>제38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li> </ol> <p><b>제49조 (수수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삭제&gt;</li> <li>&lt;삭제&gt;</li> <li>&lt;삭제&gt;</li> </ol>	<p>○ 제1항 1호~제7호 : 식물신품종보호관련조항으로 삭제</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장하려는 자</p> <p>4. 제53조에 따른 등록(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p> <p>5. 제68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p> <p>6.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p> <p>7. 제101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p> <p>8.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p> <p>9. 제118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p> <p>10. 제1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 보증을 받으려는 자</p> <p>11.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p>	<p>4. &lt;삭제&gt;</p> <p>5. &lt;삭제&gt;</p> <p>6. &lt;삭제&gt;</p> <p>7. &lt;삭제&gt;</p> <p>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p> <p>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p> <p>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는 자</p> <p>4. 제31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으려는 자</p> <p>12. 제138조제3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p> <p>13. 제1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으려는 자</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14.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물부령</p>	<p>으려는 자</p> <p>5. 제35조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p> <p>6. 제40조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p> <p>7.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p> <p>8. 제47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p> <p>9.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물</p>	<p>○ 수수료 근거 및 수수료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분석 신청 수수료</li> <li>-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li> </u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61조 (수수료의 면제)</b>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u>제160조에도 불구하고</u>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62조 (수수료의 반환)</b>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부령으로 정한다.</p> <p><b>제50조 (수수료의 면제)</b>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u>제49조에도 불구하고</u> 수수료를 면제한다.</p> <p><b>제51조 (수수료의 반환)</b> ① 수수료는 <u>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li> <li>2.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취소한 경우</li> </ol> <p>② 제1항단서 각 호에 따른 수수료</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163조 (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5.31]</p> <p>제164조 (서류의 보관 등) ①</p> <p>제165조 삭제</p> <p>제16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농촌진흥청장</u>, 산림청장,</p>	<p><u>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u></p> <p>제52조 (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삭 제&gt;</p> <p>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농촌진흥청장</u>, 산림</p>	<p>○ 식물신품종보호법관련조항</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6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b> 산림용 종자, 뽕나무 묘목, 연초(煙草) 종자, 수산식물 종자 및 인삼 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b>제5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b> ① 산림용 종자, 뽕나무 묘목, 연초(煙草) 종자, 수산식물 종자 및 인삼 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②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168조 (「특허법」의 준용)</b>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 9 장 별 칙 &lt;개정 2010.5.31&gt;</b></p> <p><b>제169조 (침해죄 등)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lt;삭 제&gt;</u></p> <p><b>제 7 장 별 칙</b></p> <p><u>&lt;삭 제&gt;</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71조 (거짓표시의 죄)</b> 제9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72조 (비밀누설죄 등)</b>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제166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10.5.31]</p> <p><b>제173조 (무등록종자업의 죄 등)</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112조제1항</u>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li> <li>2. <u>제133조</u>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li> </ol>	<p><b>제55조 (무등록종자업의 죄 등)</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제16조제2항</u> 또는 <u>제37조제3항</u>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li> <li>2. <u>제31조</u>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형벌 대상을 과태료 대상으로 완화</li> <li>○ <u>단순 수출입 신고 폐지 반영</u></li> </ul>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3. 제1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p> <p>4.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p> <p>5.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6. 제1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p> <p>7. 제1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p> <p>8.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p>	<p>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p> <p>4. &lt;삭제&gt;</p> <p>5. &lt;삭제&gt;</p> <p>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p> <p>7. &lt;삭제&gt;</p> <p>8. &lt;삭제&gt;</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9. 제1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p> <p>10. 제148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0.5.31]</p> <p>제17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제1항, 제171조 또는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p>	<p>5.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p> <p>10. &lt;삭제&gt;</p> <p>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75조 (몰수 등)</b> ① 법원은 제169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 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p> <p>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p> <p><b>제176조 (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p>	<p>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lt;삭 제&gt;</u></p> <p><b>제57조 (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112조제2항</u>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p> <p>2. <u>제131조제1항 후단</u>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3. <u>제140조제1항 본문</u>을 위반하여 <u>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u></p>	<p>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1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u>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p> <p>2. <u>제30조제2항</u>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3. &lt; 삭 제 &gt;</p> <p>3. <u>제35조제1항</u>을 위반하여 <u>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u></p> <p>4. <u>제37조제1항</u>을 위반하여 <u>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u></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4. 제1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p> <p>5. 제145조제1항에 따른 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②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5. 제42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p> <p>6.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와 이를 위한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7. 제4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43조 각 호를 위반하여 종자를 진열·보관·판매한 자</p>	<p>○ 생산판매 변경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82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li> <li>3.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li> </ol>	<p>2.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u>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p> <p>&lt;삭 제&gt;</p>	<p>○ 신품종보호법으로 이관</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4.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p> <p>5.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31]</p>	<p>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p>	